

保育施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 開發

鄭基源

吳美暎

安賢愛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近代化와 産業化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핵가족화의 추세는 전통적인 家族의 機能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조부모 및 일가 친척이 함께 맡아왔던 子女養育의 책임이 이제는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도 經濟·社會的 與件이 變化되면서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 및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 참여는 날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어머니의 子女養育 責任 일부가 국가와 사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子女養育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어짐에 따라 保育需要가 증가되고, 정부는 증가된 保育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施設 擴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부터 保育施設 擴充事業을 社會福祉分野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특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保育施設의 設置를 의무화하였으며, 앞으로의 3개년(1995~1997)동안에는 약 1조3천억원을 投·融資하여 公共保育施設 3,150개소, 職場保育施設 1,440개소, 民間保育施設 3,000개소 등 모두 7,590개소의 保育施設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保育事業의 量的 擴充은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保育事業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課題에는 保育施設의 擴充만이 아니라,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兒童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保育兒童이 행복하고 자신감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에서 相互作用을 할 수 있는 兄弟姊妹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은데, 保育事業은

託兒의 機能과 함께 또래集團과의 共同經驗을 통해 兒童에게 社會性을 익히게 하는 早期教育의 기능도 하게 된다.

本 報告書에서는: (1) 保育施設을 獨立的이고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評價機關의 構成 및 評價 體系를 구상하고, 그리고 (2) 保育施設을 客觀的이고 一貫性있게 평가할 수 있는 評價의 指標를 신고 있다. 評價機關의 構成과 評價體系의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 기구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評價業務의 公正性和 專門性を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保育施設의 評價基準과 관련하여서는 保育事業에 있어서 評價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면서도 평가가 客觀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評價體系와 評價基準은 앞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保育施設 認准評價制度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는 三星福祉財團의 財政 支援을 받아 本院의 鄭基源博士, 吳美暎, 安賢愛 主任研究員에 의해 수행되었다. 研究陣은 評價의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評價領域에 관하여 여러가지 助言을 해준 保育關聯 學界 專門家와 일선 保育施設 선생님들께 謝意를 표하고 있으며, 試驗評價에 응해준 全國의 99개 保育施設과 原稿의 內容을 세밀하게 검토해준 本院의 金元重博士와 李顯松博士에게도 感謝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실린 모든 內容은 研究陣의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要約 및 政策建議	11
第1章 序論	15
第1節 保育施設 評價의 必要性	15
第2節 保育의 定義	18
第3節 研究의 目的	21
第4節 研究의 內容	22
第5節 研究의 方法	23
1. 文獻研究	23
2. 事前調查	24
3. 專門家 會議	25
4. 試驗評價	25
5. 專門家 델파이調查	25
第6節 研究의 制限點	26
第7節 報告書의 構成	27
第2章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理論的 背景	29
第1節 兒童保育의 質 決定 要因	29
1. 兒童의 日常的 經驗 側面	30
2. 保育施設의 物理的 側面	31
第2節 保育施設의 認准評價	36
1. 認准評價의 特性	36

2. 美國의 認准制度	38
3. 濠洲의 認准制度	39
第3章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	42
第1節 保育施設 評價의 目的	42
第2節 保育施設 評價의 關聯 組織	43
第3節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	46
第4節 保育施設 評價認准 結果의 活用	47
第4章 保育施設 評價基準	49
第1節 評價基準 開發의 基本方向	49
第2節 評價領域, 評價項目, 評價基準의 選定	50
第3節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構成	55
1. 物理的 環境	56
2. 運營 및 從事者 管理	63
3. 保育프로그램	66
4. 相互作用	71
5. 附錄: 父母 滿足度	77
第5章 試驗評價의 結果	81
第1節 試驗評價의 目的 및 方法	81
1. 試驗評價의 目的	81
2. 評價對象 및 評價節次	81
3. 資料의 分析	84
第2節 評價 結果	84
1. 調查對象 施設의 一般의 事項	84

2. 物理的 環境	87
3. 運營 및 從事者 管理	88
4. 保育프로그램	94
5. 相互作用	95
6. 父母 滿足度	97
第 6 章 結 論	99
第 1 節 要 約	99
1. 保育施設 評價의 必要性	99
2.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	99
3.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	100
4. 保育施設 評價基準	100
5. 試驗評價의 結果	104
第 2 節 結論: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導入方案	107
1.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 導入의 必要性	107
2. 保育施設 評價體系(案)	108
3.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案)	108
4. 保育施設 評價基準(案)	108
5. 評價認准 結果의 活用(案)	109
6.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導入 節次(案)	110
參 考 文 獻	111
附 錄	117

表 目 次

〈表 1〉 保育施設 擴充計劃	17
〈表 2〉 教師-兒童의 相互作用	31
〈表 3〉 集團規模 및 教師 對 兒童 比率	33
〈表 4〉 保育施設의 評價領域	52
〈表 5〉 保育施設의 定量的 評價基準	54
〈表 6〉 試驗評價 對象의 分布	82
〈表 7〉 保育施設의 設立年度	85
〈表 8〉 保育兒童의 規模別 施設數	85
〈表 9〉 年齡別 平均 保育兒童數	86
〈表 10〉 保育料 免除·減免 兒童의 比率	86
〈表 11〉 保育 總時間	87
〈表 12〉 物理的 環境 領域의 平均 點數	88
〈表 13〉 物理的 環境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88
〈表 14〉 教師當 兒童數 및 集團規模	89
〈表 15〉 全體 豫算中 教材教具費가 차지하는 比率	89
〈表 16〉 全體 豫算中 從事者 再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	90
〈表 17〉 保育教師陣의 學歷別 分布	91
〈表 18〉 教師陣의 平均 保育經歷別 分布	91
〈表 19〉 教師들의 現施設에서의 勤務期間	92
〈表 20〉 民間個人 어린이집 教師陣(施設長 除外)의 平均 持續勤務期間	92

〈表 21〉	教師陣의 平均經歷 및 持續勤務期間 (施設類型別, 地域別)	93
〈表 22〉	教師의 年平均 再教育 時間	93
〈表 23〉	保育프로그램의 平均點數	94
〈表 24〉	保育프로그램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94
〈表 25〉	保育프로그램의 主要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및 地域別 差異	95
〈表 26〉	相互作用 領域의 平均 點數	96
〈表 27〉	相互作用 領域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96
〈表 28〉	保育施設에 對한 父母의 滿足度	97
〈表 29〉	各 項目에 對한 父母 滿足度の 施設類型別 差異	98

그림 目次

[그림 1]	保育施設 評價組織	43
--------	-----------------	----

要約 및 政策建議

1. 保育施設 評價의 必要性

保育事業은 급속히 부상하는 국가적 事業으로, 政府와 民間의 共同 努力에 의하여 嬰幼兒 保育의 量的 擴大는 크게 進전되었다. 그러나 保育事業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는 保育施設의 확충만이 아니라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의 專門性을 높임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保育의 專門性은 客觀的인 基準에 바탕을 두는 保育施設의 評價와 改善을 통해서 提高되어 질 수 있다.

2.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案)

保育施設 評價體系에는 公正性과 專門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研究에서 提案되는 評價體系는 다음과 같다.

- ① 評價管理團: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보육실무자, 그리고 보육아동의 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企劃, 評價團의 運營, 그리고 評價結果의 認准 등의 기능을 한다.
- ② 評價團: 비상설 기구로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의 結果에 대한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를 실시하고, 그 評價의 結果를 報告書로 작성하여 評價管理團에 提出한다. 評價團은 評價의 대상이 되는 保育施設의 규모에 따라서 3~4명으로 구성되며, 評價團의 구성

은 評價管理團이 선임한다.

- ③ 自體評價委員會: 自體評價委員會는 해당 保育施設에 대한 自體評價를 실시하여 결과를 評價管理團에 제출하고, 現地訪問評價團의 評價業務를 지원한다.

3.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案)

評價의 結果가 법적인 規制가 아닌 認准의 형태를 지니도록 한다. 따라서 評價認准을 희망하는 保育施設에 대해서만 評價를 실시하며, 自體評價의 過程이 강조되도록 한다.

- ① 評價認准의 申請과 對象 保育施設의 選定: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制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保育施設은 評價時期를 결정하여 신청한다.
- ② 保育施設 自體評價의 遂行: 評價管理團의 自體評價 지침에 따라 自體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保育施設의 自體評價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評價管理團에 제출한다.
- ③ 書面評價 및 現地訪問評價의 實施: 評價團은 評價管理團에 제출된 自體評價 보고서를 검토하고, 現地訪問評價의 지침에 따라 訪問評價를 실시한다.
- ④ 認准與否의 決定: 評價管理團은 評價團이 제출한 評價結果 보고서를 바탕으로 評價認准 여부를 결정한다.

4. 保育施設 評價基準(案)

保育施設의 評價基準은 물리적 환경, 운영 및 종사자관리, 保育프로그램,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4개 領域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며, 保育

施設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附錄의 評價表 參照).

가. 物理的 環境

物理的 環境은 兒童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탐색과 학습의 기회제공을 통해 兒童의 最適의 發達과 成長을 촉진시키는 주요 전제 조건으로, 保育施設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어 지는 실내·외 공간구조, 시설 및 설비, 교재 및 교구 등을 포함한다.

나. 運營 및 從事者 管理

運營 및 從事者 管理는 保育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서, 保育施設 運營評價, 教師陣의 經歷과 保育의 持續性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다. 保育프로그램

保育프로그램은 保育施設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칭하는 것으로, 건강·위생·영양(급식)·안전·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라. 相互作用

相互作用은 教師-兒童, 教師-教師, 保育施設-父母, 保育施設-地域 社會의 네 종류로 분류해 평가한다.

마. 父母 滿足度

부모의 評價資料를 얻기 위한 것으로,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에 대한

객관성을 補完하고, 保育施設이 부모와의 相互作用을 提高할 수 있는 방법으로 活用된다.

5.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導入 節次(案)

가. 評價認准制度 導入의 基本 條件

- 外國의 경우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를 도입하기 위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
- 關聯 專門家들의 研究를 바탕으로 評價認准制度의 導入이 검토되어야 함.

나. 評價認准制度 導入 準備委員會의 設置

- 兒童保育 關聯 전문가들로 評價認准制度 導入을 위한 準備委員會를 구성함.
- 委員會에서 評價認准의 體系 및 節次, 評價基準을 개발함.
- 評價認准制度의 導入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保健福祉部, 教育部 및 勞動部의 관련 공무원과 준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함.

第1章 序 論

第1節 保育施設 評價의 必要性

保育事業은: (1)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하여 産業勞動力의 需給에 기여하고; (2) 저소득층의 家口當 所得增大에 도움을 주어 사회 중산층의 폭을 두텁게 하고; (3) 여성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사회적 생산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4) 부모의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출생 지역에 따른 어린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며; 그리고 (5) 아동기에 共同 經驗의 蓄積과 情緒的 安定을 가능케 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기능을 한다(행정쇄신위원회, 1994). 이러한 保育事業은 급속히 부상하는 국가적 사업이 되었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嬰幼兒 保育의 양적 확대는 크게 진전되었다.

특히 1990년에 嬰幼兒保育法이 제정됨으로써 이때까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嬰幼兒 保育事業의 관장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면서, 保育事業 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保育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부지원 保育施設 설립과 일반 지역의 民間保育施設 설립을 추진하면서 保育事業의 양적 확대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近代化와 産業化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핵가족화의 추세는 전통적인 家族의 機能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많은 가족기능의 변화 중에서도 子女養育의 기능은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조부모 및 일가 친척에게 많이 주어지던 子女養育의 책임이 이제는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子女養育 機能은 더욱 증가되었다. 그러면서도 經濟構造의 變化에 따른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 및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 참여는 날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어머니에게 주어지던 子女養育의 責任 일부가 국가와 사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子女養育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어짐에 따라 保育需要가 증가되고, 정부는 증가된 保育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保育施設 擴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0년부터 保育施設 擴充事業을 社會福祉分野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특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保育施設의 設置를 의무화하였으며, 稅制惠澤을 통하여 地域社會 인사가 保育事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3개년(1995~'97)동안에는 약 1조3천억원을 投·融資하여 公共保育施設 3,150개소, 職場保育施設 1,440개소, 民間保育施設 3,000개소 등 모두 7,590개소의 保育施設을 확충시킴으로써 약 43만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保育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保育施設의 設置資金 融資을 위하여 國民年金基金에서 이미 1조1,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民間保育施設 800개소, 職場保育施設 220개소 등 모두 1,020개소의 保育施設에 1,500억원을 施設設置費로 융자해 줌으로써 保育施設의 擴充을 유도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1994a; 보건복지부, 1995b).

이러한 정부의 保育施設 확충계획에 따라 保育事業의 量的 擴充은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保育事業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너무 量的인 擴充에만 치우친 나머지 質的인 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그 결과 地域에 따라서는 保育施設의 供給 超過가 나타나면서도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保育施設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결국 保育에 대한 需要가 단순히 量的인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保育의 質的인 측면을 고려하는 保育需要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 1〉 保育施設 擴充計劃

(單位: 個所)

구 분		'95	'96	'97	계
계		2,246	2,696	2,648	7,590
공 공	소 계	1,000	1,050	1,100	3,150
	신 증 축	225	250	275	750
	사회복지·종교·학교시설 활용	775	800	825	2,400
직 장	소 계	446	446	548	1,440
	공 공 기 관	76	76	88	240
	기 업	370	370	460	1,200
민 간		800	1,200	1,000	3,000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1995, p.10.

따라서 保育事業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課題에는 保育施設의 擴充만이 아니라,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兒童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保育兒童이 행복하고 자신감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에서 相互作用을 할 수 있는 兄弟姊妹가 적거나, 또는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保育事業은 託兒의 機能과 함께 또래集團과의 共同經驗을 통해 兒童에게 社會性を 익히게 하는 早期教育의 기능도 하게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3).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의 專門性を 높임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保育의 專門성은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는 保育機關의 評價와 改善을 통해서 提高되어 질 수 있다. 評價를 통해서 일선의 保育施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保育事業이 지니는 본래의 目的에 맞게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測定하고, 保育施設의 管理나 運營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保育施設의 改善에 필요한 情報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敎師의 專門性 程度, 保育프로그램의 內容 등과 같은 質的 側面的 評價基準이 미흡한 상태이다. 保育施設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는 좋은 保育施設을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保育施設 종사자나 경영자 스스로도 자신이 일하는 保育施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補完해야 할 점을 찾거나 專門性을 提高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第 2 節 保育의 定義

우리나라의 保育事業은 1921년에 기독교 민간단체인 태화사회관이 서울에서 託兒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박숙자, 1990). 그 후 부산의 공생탁아소, 대구의 은총탁아소 및 인보관이 1926년에 설치되어 救濟事業의 一環으로 要保護 兒童에 대한 保護를 위해 託兒事業이 이루어졌으며, 韓國戰爭 중이던 1952년에는 정부가 ‘厚生施設 運營 要領’을 마련하여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委託·保護’하기 위하여 託兒施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고아원과 다른 없는 臨時救護的 性格의 託兒事業이었다.

兒童福祉法이 1961년에 제정되어 託兒施設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62년에 兒童福祉施設 基準令이 공포됨에 따라 ‘兒童福利의 增進과 保障을 위한’ 託兒施設로 성격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託兒施設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 1960년에 24개소이던 託兒施設이 1966년에는 116개소가 되었다. 정부가 民間託兒所의 권장을 위하여 1968년에는 未認可 託兒施設에 대한 臨時措置令을 공포하여 託兒施設

운영규정을 완화하게 되자, 1969년에는 607개소의 託兒施設에서 41,409 명의 어린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託兒施設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運營의 質이 低下되었다. 이에 정부가 1977년에 未認可 託兒施設 臨時措置令을 폐지하여 託兒施設을 법인체만이 운영하도록 제한하자, 託兒事業 자체가 위축되면서 託兒施設의 수도 줄어 들었다.

정부는 다시 1981년에 幼兒教育의 量的 擴大를 위하여 都市貧民地域과 農漁村地域의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를 설립하여 내무부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82년에는 ‘幼兒教育 振興 綜合計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 부처가 각기 다른 내무부 산하의 새마을협동유아원(263개), 보사부 산하의 어린이집(691개),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번기 상설 유아원(382개) 및 민간시설(38개)은 모두 내무부가 관장하는 1,374개소의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1982년 12월에 제정된 ‘幼兒教育振興法’을 통하여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아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의 기능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이 既婚就業女性을 위한 託兒 機能보다는 幼兒教育에 치중하게 되자, 零細民層을 대상으로 한 非營利 民間託兒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회, 여성단체, 노동단체, 개인이 중심이 되어 地域社會 民間託兒所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한국여성개발원이 家庭託兒母의 훈련을 실시하여 專門託兒人 배출도 활발해졌다.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증가에 따른 託兒施設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1987년 10월 ‘男女僱傭平等法’에 의한 職場託兒制度를 도입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88년에 88시립탁아원 29개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保育을 支援하고 婦女子들의 就業機會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保健社會部에서는 1989년 9월에 兒童福祉

법에 의한 保育事業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嬰幼兒保育과 관련된 事業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政府財政의 비효율적 투자를 가져오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다시 1991년 1월에 ‘嬰幼兒保育法’을 공포하여, 保育事業의 관장을 保健社會部로 일원화하고, 단순 ‘託兒’에서 保護와 敎育을 함께 수행하는 ‘保育’으로 機能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保育의 概念이 保護와 敎育의 兩端을 반복하여 오고 가고 하였던 것은 保育事業이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保護의 성격이 강한 때에는 그것의 반동현상으로 敎育을 강조하는 조치가 뒤따랐고(예를 들어, ‘幼兒敎育振興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의 기능), 保育이 敎育의 기능으로 고착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반동현상으로 保護를 강조하는 조치가 나왔다(예를 들면, 嬰幼兒保育法의 制定). 현행의 嬰幼兒保育法에서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그 보호자에게는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家庭福祉 增進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保育事業을 定義하여 일종의 緊急救濟 福祉서비스 또는 補充的 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嬰幼兒保育法 施行令에서 保育의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국한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4인 기준 월소득 90만원 이하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으로 다시 축소 규정하고 있는 데서 補充的 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保育의 定義는 社會發展이나 生活水準의 向上과 함께 변화하는 개념으로 그에 대한 접근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즉, 1950년대나 1960년대의 保育은 代理的 서비스로서 保護의 機能이 중시되었으나, 사회발

전에 따라 교육의 기능이 첨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87)은 兒童保育의 기능을 養育, 保護 및 敎育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요소에 똑같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옥승(1992)은 保育의 기능을 ‘家族의 不足이나 缺損을 메꾸어 주는 데 있다기 보다는 嬰幼兒에게 發達的으로나 社會文化的으로 적절한 生活機會를 제공하여 가족의 保存과 發達을 꾀하는 데’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保育을 支援的 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保育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豫防的 福祉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保育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모나 신체적 혹은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일시적으로 격리시켜 兒童虐待를 미리 防止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죽음 및 질병과 같은 가족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그 아동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켜주거나 방지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保育을 兒童의 最適 發達과 福祉를 위해서 행해지는 統合的 서비스로 정의한다.

第3節 研究의 目的

이 연구는 保育施設을 客觀的이고 一貫性있게 評價할 수 있는 體系와 基準을 開發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保育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어지고, 또한 良質의 保育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敎師의 專門性 程度, 保育프로그램의 內容 등과 같은 保育施設에 대한 質的 側面의 評價基準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는 保育機關의 評價를 통해서 保育施設

의 管理와 運營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의 專門性を 높임으로써 가능해지는데, 評價를 통해서 일선의 保育施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專門성 여부를 측정하게 되고, 保育施設 從事者나 經營者 스스로는 자신이 일하는 保育施設의 專門性を 提高할 수 있는 기준을 찾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保育施設을 獨立的이고 客觀적으로 評價할 수 있는 評價機關의 構成 및 評價 體系를 구상하고, 그리고 (2) 保育施設을 客觀적이고 一貫性있게 평가할 수 있는 評價의 指標를 개발하였다. 評價機關의 構成과 評價體系의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 기구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評價業務의 公正성과 專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保育施設의 評價基準과 관련하여서는 保育事業에 있어서 評價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면서도 평가가 客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評價體系와 評價基準은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위하여 도입될 필요가 있는 保育施設 認准評價制度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第4節 研究의 內容

이 연구에서는 保育施設의 認准評價를 위한 評價體系와 評價基準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研究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保育施設 評價體系
 - 保育施設 評價의 目的
 - 保育施設 評價 및 認准의 관련 組織

- 保育施設 評價 및 認准의 節次
- 保育施設 評價認准 結果의 活用
- 保育施設 評價基準
 - 評價基準 設定의 基本方向
 - 保育施設 評價의 領域
 - 評價項目
 - 評價項目別 評價基準
 - ① 物理的 環境
 - ② 運營 및 從事者 管理
 - ③ 保育프로그램
 - ④ 相互作用
 - ⑤ 父母의 滿足度

第 5 節 研究의 方法

이 연구에 쓰여진 方法은 文獻研究, 專門家 會議, 試驗評價 및 專門家에 의한 델파이調査 등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文獻研究

保育施設을 評價하기 위한 客觀的 基準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이론적 배경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幼兒教育 一般에 관한 評價基準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保育施設의 評價에 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1次 草案을 만들었다.

評價基準의 1次 草案은 모든 종류의 保育施設 - 國公立, 民間法人, 民間個人, 家庭保育(놀이방) 및 職場保育施設 - 을 評價對象으로 作成되었다. 保育施設이 위치한 지역의 '立地條件' 領域,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 교구 및 교재를 포함하는 '施設 및 設備' 領域, 보육아동의 현황, 입소절차, 보육시간 및 보육료, 재정 및 행정관리의 '運營 및 管理' 領域, '從事者 資格과 管理' 領域, '保育프로그램' 領域, '地域社會와의 關係' 領域 등 모두 6개 領域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教育內容과 相互作用에 대해서는 保育되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2세 미만과 2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教育內容에 대한 평가는 해당 연령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相互作用은 評價員이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조사표가 설계되었다.

2. 事前調査

事前調査의 목적을: 1) 保育施設 유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2) 1次 草案으로 개발된 평가표의 妥當性を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3) 領域別 調査方法의 適切性 및 調査의 容易性を 파악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하여 評價基準의 1次 草案을 조사표로 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법인운영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개인운영 민간어린이집 1개소, 가정보육시설(놀이방) 2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시설 등 모두 8개 시설을 대상으로 事前調査를 實施하였다. 조사팀은 전문조사원과 연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2개의 조사팀이 사전조사에 참여하였다.

3. 專門家 會議

評價基準의 1次 草案에 대한 合目的性, 適用 可能性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 1995. 1. 19에 專門家 會議를 開催하였다. 이 회의에는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관련 교수, 보육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회장,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간개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과 관련된 인사 12명이 참석하였다. 評價內容의 妥當性, 評價의 主體 및 評價表에 대한 活用方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조사표 개발이 건의되었고, 조사 내용의 포괄성 및 방대성이 지적되었다.

4. 試驗評價

事前調査와 專門家 會議를 거쳐서 評價基準의 1次 草案이 크게 고쳐졌다. 수정된 2次 草案은 保育施設의 一般現況, 構造 및 設備, 運營 및 管理, 保育프로그램, 相互作用, 父母 滿足度 등 6개 領域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현황과 운영 및 관리영역을 제외한 모든 領域은 5점 尺度로 評價할 수 있도록 作成되었다. 또한, 부록으로 평가표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란, 평가원의 조사표에 대한 의견 및 평가상의 어려움, 시험평가원의 대상시설에 대한 총평란을 넣어 3次 草案의 개발에 참고로 하였다. 試驗評價에 대한 결과는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며, 試驗評價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3次 草案은 다시 專門家 델파이 調査를 거쳐 조사표의 最終案으로 수정·보완되었다.

5. 專門家 델파이 調査

試驗評價의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評價基準의 3次 草案은 專門家 델파이 調査를 거쳐 最終案으로 發展되었다. 專門家 델파이 調査는 전문

가들의 判斷을 존중하는 調查方法으로 주로 集團意思 결정이나 未來豫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保育과 관련된 學科의 教授 및 保育施設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등 50명의 專門家들을 대상으로 3次 草案에서 구성되고 있는 각각의 評價項目들이 評價領域의 내용을 評價하기에 適合한지의 여부와 評價에 必要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電話이조사를 실시하였다.

第6節 研究의 制限點

保育施設의 評價에 있어서 評價基準은 評價領域과 評價의 準據가 되는 評價項目別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내용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향과 상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保育施設의 評價에 적용될 評價項目은 保育施設의 種類(국공립, 직장, 민간법인, 민간개인 보육시설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며, 같은 評價項目에 설정되는 評價의 基準도 保育施設의 特性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保育施設의 評價 認准을 위한 評價의 項目이나 評價의 基準에 관한 研究에서는 保育施設의 種類가 考慮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評價의 基準이 모든 保育施設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職場保育施設은 사업주의 철학과 운영방침에 따라 보육시설 간에 운영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의 職場保育施設은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評價의 基準을 標準化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놀이방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협소성으로 評價를 위한 調查가 保育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조사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國公立 保育施設과 民間法人 및 個人 運營의 保育施設만을 대상으로 하는 評價基準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으며, 評價基準의 한정적인 활용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된 保育施設の 評價體系와 評價基準이 현재의 保育施設 評價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는 최소한 5년 이상의 準備期間을 가진 후 評價制度가 導入되었던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한 제한점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研究의 결과는 保育施設 評價制度 導入을 위한 하나의 案으로 機能을 하게 되며, 評價制度의 導入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

第7節 報告書의 構成

이 報告書는 모두 6개의 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1장 序論에서는 研究의 背景과 目的, 研究의 內容과 研究方法 등을 記述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는 保育施設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良質의 保育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保育施設の 評價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保育施設을 客觀적이고 一貫性있게 評價할 수 있는 體系와 基準을 開發하는 데 研究의 目的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평가체계와 평가기준의 內容과 조사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研究의 內容과 方法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된 評價基準의 限界성과 活用の 어려움을 研究의 制限點으로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와 基準의 理論的 背景을 기술하고 있는데, 兒童保育의 質 決定要因과 외국의 保育施設 認准評價制度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保育의 質을 결정하는 要因으로 兒童의 日

常的 經驗과 保育施設의 構造的, 物理的 環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認准評價制度和 관련하여서는 認准評價의 特性을 정리한 후, 美國과 濠洲의 兒童保育 認准制度를 기술하였다. 保育施設의 評價體系에 대한 構想은 제3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먼저 保育施設 評價의 目的을 설명한 후, 保育되는 어린이, 保育施設, 그리고 地域社會에 대한 保育施設 評價의 機能을 각각 살펴 보았다. 그리고 保育施設에 대한 評價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評價組織의 構成과 機能, 그리고 3단계로 이루어진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를 기술하였다.

제4장은 保育施設의 評價에 필요한 評價基準을 評價領域과 評價의 準據가 되는 評價項目別로 설정하여 기술하였으며, 評價基準의 開發을 위한 方向을 먼저 제시하였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保育施設 評價基準은 物理的 環境(34항목), 運營 및 從事者 管理(11항목), 保育 프로그램(27항목), 相互作用(21항목)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4개의 領域과 각각의 領域에 포함되는 93개 項目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保育施設에 대한 父母의 滿足度を 측정하기 위한 17개의 項目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었다. 제5장에서는 試驗調查의 結果를 정리하고 있다. 試驗評價의 대상은 100개 어린이집으로, 國公립, 民間법인운영 어린이집, 民間개인/단체운영 어린이집 등을 施設類型別 및 地域別로 구분하여 保育의 水準을 비교하였다.

研究의 結果를 요약하여 제6장에 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政策的인 提案도 포함시켰다. 부록에서는 保育施設 評價를 위한 調査表의 最終案과 試驗評價 結果의 主要 統計資料를 실었다.

第2章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理論的 背景

第1節 兒童保育의 質 決定 要因

兒童保育의 質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은 크게 두가지 範疇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政府機關에 의한 법적인 제재를 통한 것으로 強制的인 “規制”의 성격을 띠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과 그에 관련된 규칙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하나는 關聯 專門家 集團에 의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認准”의 형태를 띠게 된다. 前者가 保育施設의 構造的, 物理的 次元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後者는 兒童의 日常的인 經驗을 중시하여 兒童과 環境(교사, 교구, 시설)과의 相互作用的인 측면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0).

保育의 質을 統制하는 이 두가지 接近 方法 중에서 兒童發達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兒童의 日常的인 經驗으로, 이것은 특히 教師와의 相互作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保育施設의 物理的 環境要件도 兒童의 日常的인 經驗 및 의미있는 相互作用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연구된 兒童保育의 質을 통제하는 代表的인 요소들을 비평적으로 개관하여 保育施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의 개발에 필요한 理論的 背景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兒童保育 프로그램의 質的 水準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兒童의 日常的 經驗 側面

외부에서 주어지는 刺戟과 그에 대응하는 經驗들로 이루어지는 兒童의 日常的인 經驗은 兒童들의 總體的인 發達, 즉 言語·認知·情緒·身體·社會性 發達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MaCartney et al, 1982). 이러한 兒童의 日常的인 經驗의 대부분은 教師와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구체화되므로, 教師-兒童의 相互作用은 전반적인 兒童保育의 質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NAEYC, 1983d). 또한 어떤 내용이 서로 교환되는가 보다는 어떻게 교환되는가와 같은 過程의인 側面, 혹은 相互作用의 方法이 더욱 중요하다.

兒童의 最適의 發達は 教師와 兒童간의 肯定的, 支援的, 個別的인 相互作用에 의해 가능해 지는데(NAEYC, 1984; 박혜정 외, 1987에서 再引用), 教師와 兒童이 이루는 相互作用의 量과 形態가 兒童保育의 質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강숙현, 1988).¹⁾ 이는 兒童이 教師와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자기조절력, 독립심, 자아존중감 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教師-兒童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는 보육시설의 구조적 측면인 教師에 대한 兒童 比率 및 教師의 資格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教師-兒童의 相互作用의 바람직한 方法에 대해서 미국의 영유아교육 인정기관인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이하에서는 'NAEYC'로 쓴다)과 호주의 인정기관인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이하에서는 'NCAC'로 쓴다)이 제안하는 대표적인 準據들은 <表 2> 와 같다.

1) 다른 나머지 두가지 요인은 물리적 환경의 조직 및 활용, 학습자료이며, 아동의 모든 행동을 이 세가지 환경요인과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表 2〉 教師-兒童의 相互作用

NAEYC(미국)	NCAC(호주)
아동에 대한 존중 및 애정 표현	아동에 대한 애정 및 친절
아동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	공평한 태도 및 개개인의 욕구 수용
아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절한 태도	긍정적인 지도 및 행동통제
긍정적인 지도 및 행동통제(훈육)방식	아동의 감정 및 욕구에 대한 능동적 반응
남·녀 아동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동발달수준에 적합한 독립성 격려	아동의 자기 존중감과 독립성 증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육성	아동의 호기심 및 사고능력 자극
자유롭고 편안한 학습환경의 제공	즐거움 환경의 창조 및 제공

資料: NAEYC, 『Young Children』, 1983d & 1983e; 강숙현(역),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 실제』, 1991.
 NCAC,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Handbook』, 1993.

2. 保育施設의 物理的 側面

保育프로그램의 質的 水準을 評價하는 研究에 의하면, 集團規模, 教師 對 兒童 比率, 教師의 資格 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이영·김미령, 1990: 52),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세 변인은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Phillips, 1988; NRC, 1990: 87에서 재인용). 이 세가지 변인중 集團規模가 兒童의 認知發達에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NRC, 1990: 87), 教師에 대한 兒童 비율은 3세 未滿의 兒童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나, 就學前 兒童에게는 덜 영향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教師의 資格은 兒童發達에 관한 教育 및 訓練이 4~5세의 취학전 兒童의 發達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세가지 변인 외에 兒童發達을 촉진시키는 兒童養育의 環境으로 는 보육교사의 지속성, 하루일과의 구조성, 물리적 환경의 적절함 등

이 제시되고 있다(NRC, 1990: 91).

가. 集團規模

集團規模는 兒童의 연령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保育의 質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소가 되면서도 기존의 연구에서나 법적 규제에서는 간과되어 왔다. 우리나라 嬰幼兒保育法은 教師 對 兒童 比率과 教師의 資格은 명시하고 있으나, 集團規模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²⁾ 그러나 대집단에서의 保育은 소집단에서의 보육보다 아동의 제한된 언어능력, 부적절한 행동, 짧은 집중시간 등과 관련되어 아동의 긍정적이지 못한 상호작용의 유형 및 느린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Belsky, 1984: 19).

美國의 嬰幼兒教育 認准機關인 NAEYC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2세 미만인 경우 6~8명, 2~3세인 경우 8~12명, 3~4세인 경우 14~20명, 4~5세인 경우 16~20명으로 융통성있게 제시하고 있다(表 3 참조).

나. 教師 對 兒童比率

한 교사가 지도하는 兒童의 數는 教師와 兒童의 相互作用, 개별적인 접촉, 의미있는 학습활동 및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제한되어야 한다(NAEYC, 1984; 박혜정 외, 1987에서 재인용). 教師 對 兒童 比率은 아동의 연령, 특별한 요구를 가지는 아동의 포함 여부, 활동유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집단크기와의 관계에서 그 비율이 유지된다(박혜정 외, 1987: 50).

2) 때때로 집단규모는 교사 대 아동비율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집단규모와 교사 대 아동비율은 분명히 다르며, 구별되어야 한다.

〈表 3〉 集團規模 및 教師 對 兒童 比率

구 분		법 적 기 준					전 문 가 기 준	
아동연령	국 가	일본	싱가폴 ¹⁾	영국	미국 ²⁾ (FIDCR)	한국	일본보육 협의회 ³⁾	미국 (NAEYC)
	집단 크기 (아동수)	2세 미만	N/C ⁴⁾	N/C	N/C	6	N/C	N/C
3세		12			8~12			
4세		6~8			14~20			
5세		10			16~20			
교사 대 아동 비율	1세	1:6	1:5	1:3	1:3	1:5	1:3	1:3~4
	2세		1:8				1:5	
	3세	1:20	1:12	1:8	1:4	1:7	1:15	1:4~6
	4세		1:15				1:7~10	
	5세		1:25				1:8~10	

註: 1) 싱가포르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8개월 미만이 1:5, 18~30개월이 1:8, 30개월~3세 미만이 1:12임.

2) FIDCR(Federal Interagency Day Care Requirement)는 미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196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81년 Reagan 행정부하에서 폐기되었음.

3) 일본보육협회의 아동복지법 개정요구 기준임.

4) 명시되어 있지 않음.

資料: 일 본 - 厚生省兒童家庭局編, 『兒童福祉法の 解説』, 19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1992.

싱가폴 - The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Child Care Centers Act*(revised edition 1988), 1988.

영 국 - HMSO,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 Vol.2; "Family Support Day Care and Educational Provision for Young Children", 1991.

미 국 - Kahn & Kamerman, *Child Care Facing Hard Choices*, 1987; NRC,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Child Care Policy in the 1990's*, 1990.

한 국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1995.

教師 對 兒童 比率은 4~5세의 아동보다는 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교사의 낮은 비율은 교사의 아동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여 肯定的인 相互作用 및 情緒的인 紐帶를 촉진시킨다(Howes & Rubenstein, 1985; NRC, 1990: 88에서 재인용). 그러나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아동의 혼자놀이에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나(Holloway & Reichhart-Erikson, 1988),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성을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McCartney, 1984). Clarke-Stewart는 教師에 대한 兒童의 比率이 높을 때 兒童들이 더욱 相互協同的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教師 對 兒童 比率의 重要性이 兒童年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表 3 참조).

다. 教師의 資格

兒童保育과 관련된 教師의 質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일관된 조사결과는 教師의 兒童關聯 教育 및 訓練 程度와 就學前 兒童 發達과의 肯定的인 相關關係이다. 반면에 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경우, 아동발달 관련 교육 및 훈련보다는 교사의 총 교육연수가 아동발달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아동연령에 따른 教師偏在의 多樣性을 시사하고 있다(NRC, 1990: 89).³⁾ 그러나 교사의 경력은 보육의 질을 보장하는 데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Ruopp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1979)에 의하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어린 아동에게 무관심하며, 兒童의 認知的·社會的 發達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NRC, 1990: 90). 또한 Kontos & Fiene(1987)도 교사의 경험만으로는 아동발달의 지표가 될 수 없다

3) 이 때의 비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보육교사와 전문대 이상 학력의 보육교사와의 비교에 의한 것임(Berk, 1985; NRC, 1990: 87에서 재인용).

고 하였다(NRC, 1990: 90).

라. 教師의 持續性

養育教師의 持續性은 兒童의 情緒的 紐帶面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養育教師의 잦은 변동은 兒童의 父母와의 不安定한 紐帶와 연관되어 있다(NRC, 1990: 92). 특히 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특정 교사와의 유대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好奇心, 探索力 등과 긍정적인 相關關係가 높음을 보여 주고 있어서 特定 保育教師와의 安定的인 情緒 紐帶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대한 탐색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하루 日課의 構造 및 內容

단순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兒童을 돌보는 공간으로서의 保育施設(예를 들면, 자유놀이로 채워진 하루 일과)보다는 學校教育에 兒童을 준비시키는 構造化된 하루 日課가 兒童의 認知發達에 더욱 肯定的인 效果를 갖는다(McCartney, 1984; NRC, 1990: 92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인지발달에의 효과는 低所得層 兒童들에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多樣한 哲學과 그에 따른 教育方式들이 兒童의 學習準備度 形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 없이 동등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yce, 1988; Schweinhart et al., 1986; NRC, 1990: 92, 재인용). 그러나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서는 교사가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아동의 사회적응력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학습내용보다는 학습방법이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Schweinhart et al., 1986; NRC, 1990: 92에서 재인용). 따라서 兒童의 정서·인지·사회

성발달을 도모하는 학습내용, 자유선택 놀이 및 집단활동 경험의 제공, 적절하게 구조화된 교과과정 등이 兒童保育의 質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게 된다(NRC, 1990: 333~337).

바. 物理的 環境

保育施設의 物理的 環境은 두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兒童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保育施設의 快適性 및 安全性 保障에 대한 중요성이고, 두번째는 兒童에게 探索과 學習의 機會를 提供하는 教育적인 環境으로서의 중요성이다. 兒童은 더욱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保育施設에서 외부환경의 방해 없이 스스로의 놀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Holloway & Reichhart-Erikson, 1988), 아동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교구가 있을 때 문제해결의 기술이 증가한다(NRC, 1990: 94). Clarke-Stewart(1987)는 保育施設이 잘 정돈되어 있고, 다양한 교구를 갖추고 있으며, 興味領域으로 조직되어 있을수록 兒童들의 認知·社會性 技術이 發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RC, 1990: 94).

第2節 保育施設의 認准評價

1. 認准評價의 特性

認准評價는 프로그램 評價의 한 領域으로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된 基準에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다(Anderson, Ball, Murphy & Associates, 1975: 4; Goodwin & Driscoll, 1980: 343에서 재인용). 따라서 保育프로그램 評價에서는 認准評價가 保育施設의 保護 및 教育 機能의 質的 水準을

改善 또는 向上시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認准評價에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습자료 등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適合性的의 評價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Goodwin & Driscoll, 1980: 344). 認准基準은 정기적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지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설정된다(Goodwin & Driscoll, 1980: 343).

認准評價 過程은 3단계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양식을 갖는다(Goodwin & Driscoll, 1980: 344). 1단계는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自己評價段階로 기관 운영자, 교사,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2단계는 保育施設에서 제출한 自體評價報告書의 妥當性檢證段階인데 훈련받은 관찰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관찰·보고한다. 3단계는 認准 與否의 決定段階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認准評價 體制는 제시된 基準에 대한 부합 정도를 스스로 評價하는 自己評價의 過程으로 自己規制的 特徵을 지니며,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진다(강숙현, 1988: 32~33). 따라서 認准決定은 법적 규제의 성격을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認准의 結果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이라는 전문성의 지위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공적인 효력을 갖는다. 認准評價 過程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認准決定을 위한 評價가 단기간내에 수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認准評價는 특히 처음 단계인 自己評價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자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教師나 경영자들에게 자신감과 전문성을 고양시켜 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강점과 결함을 명료하게 알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협의와 教師評價 및 現職教育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 좋은 保育施設을 선택할 때의 評價基準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保育이 專門的 領域임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켜 주어 保育分野의 地位 向上을 꾀할 수 있다(강숙현, 1988: 34~35).

그러나 認准評價의 基準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기초한 基準設定의 證據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認准評價 過程에 참여하는 관찰자들의 판단이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과 학습자의 성취 결과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認准評價 體制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Goodwin & Driscoll, 1980: 344~345). 또한 認准評價의 基準이 각 항목별로 최소한의 성취수준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최소 수준 이상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認准評價 基準이 질적 향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認准評價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教授過程과 兒童의 學習成就를 測定하는 評價基準에 대한 經驗的 證明과 觀察者 評價의 客觀性 獲得이 무엇보다 중요하다.(Goodwin & Driscoll, 1980: 345).

2. 美國의 認准制度

미국의 NAEYC가 198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初期 兒童教育 프로그램 認准體制의 주요 目的은 첫째, 兒童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質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兒童教育 프로그램의 關係者들을 돕기 위함이고, 둘째는 優秀한 質의 프로그램에 대한 認准을 決定함으로써 프로그램의 質的 水準을 評價하고 專門性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강숙현, 1988: 38; 심성경, 1989: 11).

NAEYC의 認准基準은 保育프로그램이 兒童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發達水準上의 適切性(developmental appropriateness)’을 전체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 교사진, 그리고 행정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우수한 兒童教育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NAEYC의 認准體制는 法的인 規制없이 各 保育施設의 自發的 參與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院長, 教師, 父母에 의한 自己評價이며, 제2단계는 훈련된 전문 관찰자의 現場訪問에 의한 妥當性 檢査, 그리고 마지막으로 3人的 兒童教育專門家로 구성된 委員會에서의 認准決定으로 구성되어 있다. 認准의 遲延으로 評價된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한번 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위원회에 회부된다. 認准된 機關은 認准決定의 時效가 만료되는 3년마다 계속해서 認准過程에 재참여한다(심성경, 1989: 13).

3. 濠洲의 認准制度

호주는 兒童保育 認准制度를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나라이다(NCAC, 1993; VII). 保育施設이 認准制度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거나, 認准制度의 운영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호주의 兒童保育 認准制度는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발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및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兒童保育 認准制度는 各 발달 단계에 알맞는 긍정적 경험과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質 높은 保育서비스를 받는 것이 兒童의 權利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認准制度의 目的도 아동의 가족이 가치있고 자아충족하는 사회구성원이 되게 돕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부모와 함께 아동의 요구를 최선으로 충족시키

며 전문가로서 발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가 아동보육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보육 전문직의 일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NCAC, 1993: II).

따라서 濠洲의 認准制度에서는 좋은 보육시설을 첫째, 보육시설과 부모들의 합의에 의한 시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明確한 哲學과 目標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모든 兒童의 個別性を 認定하고 增進시키며 셋째, 모든 活動構成과 實行에 있어서 兒童의 發達水準上的 適切性を 考慮하고 마지막으로, 兒童保育에 있어서 父母와 教師의 相互補完의 役割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教師과 父母의 關係를 增進시키고, 부모가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의 父母參與를 이끌어 내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NCAC, 1993: V).

認准過程은 미국의 NAEYC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5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質的 向上을 위한 認准過程 評價에 參與한다는 登錄段階이며, 제2단계에서는 院長, 教師, 父母에 의한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自體評價(self-study)를 實施하고, 自體評價 結果가 認准基準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認准基準에 도달할 수 있도록 實踐計劃(plan of action)을 세우게 된다. 제3단계는 NCAC에서 파견된 전문가팀이 施設을 직접 방문하여 自體評價結果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觀察報告書를 작성하며, 제4단계에서는 調整者(moderator)가 自體評價報告書, 實踐計劃報告書, 觀察報告書를 바탕으로 NCAC에 그 評價施設에 대한 認准與否를 제안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改善方案도 함께 건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CAC는 自體評價報告書, 觀察報告書, 調整者의 報告書 및 提案을 참고로 해당 시설의 인준여부 및 보육수준을 결정하고, 실천계획의 실시 기한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즉 保育水準을 ‘基本的 保育’, ‘좋은 質의 保育’, ‘높은 質의 保育’의 3단계로 나누어 評價하고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認准期間을 다르게 적용한다.

基本的 保育을 제공하는 것으로 評價되었을 때는 1년마다, 좋은 質의 保育을 제공하는 것으로 評價되었을 때는 2년마다, 높은 質의 保育을 제공하는 것으로 評價되었을 때는 3년마다 評價報告書를 제출하도록 認准한다(NCAC, 1993).

第3章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

第1節 保育施設 評價의 目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保育은 ‘영아 및 유아를 心身의 保護와 健全한 目的을 통하여 健康한 社會성원으로 育成하고, 그 보호자에게는 경제·社會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家庭福祉 增進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保育施設 評價의 目的은 일선의 保育施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保育이 지니는 본래의 目的에 맞게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保育施設의 관리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保育施設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이러한 保育施設의 評價는 궁극적으로 保育되는 어린이, 保育施設, 그리고 地域社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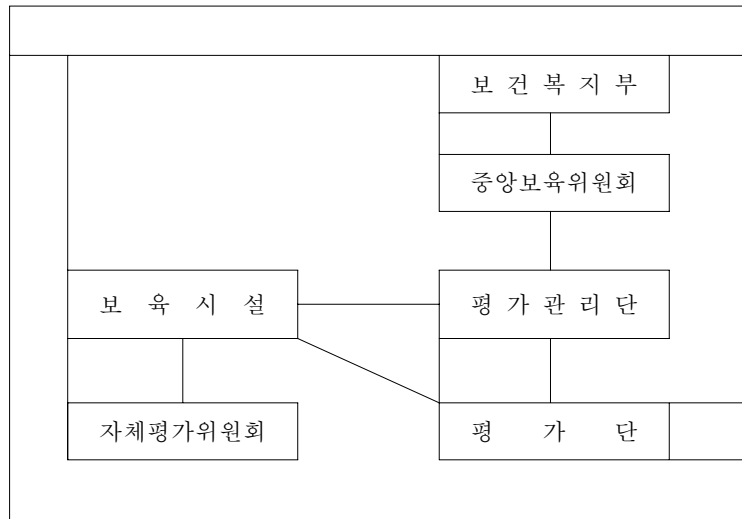
保育되는 어린이에 대하여: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린이의 權利로서, 保育施設의 評價는 또래 集團과의 相互作用과 肯定的인 經驗을 통하여 가치있고 健康한 社會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保育施設에 대하여: 保育施設이 실시하고 있는 保育프로그램과 保育 與件에 대하여 스스로 評價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改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들과 부모, 그리고 保育教師의 요구에 가장 잘 적응하는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地域社會에 대하여: 保育施設의 評價에 부모가 참여함으로써 保育의 重要性이 인정될 수 있으며, 保育의 專門性에 대한 가치도 인정될 수 있다.

第2節 保育施設 評價의 關聯 組織

保育施設에 대한 評價의 公正性과 專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保育施設 評價에 대한 認准은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保育施設의 評價에 관련된 조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1] 保育施設 評價組織

中央保育委員會

- 保健福祉部에 설치되어 있는 이 위원회는 嬰幼兒의 保育에 관한 事業의 企劃, 調査, 實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주요 사항은: (1) 嬰幼兒 保育事業의 基本 方向 및 政策樹立에 관한 事項, (2) 嬰幼兒 保育事業의 調査 및 研究, (3) 嬰幼兒 保育프로그램 및 教材, 教具의 開發普及, 그리고 (4) 기타 嬰幼兒 保育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 하지만 中央保育委員會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保育施設의 評價認准에 관련한 中央保育委員會의 역할은 評價管理團의 운영에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評價管理團

- 保育施設 評價管理團은 中央保育委員會 산하에 常設機構로 둔다.
- 評價管理團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보육실무자, 그리고 보육어린이의 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 保育施設의 評價認准과 관련한 評價管理團의 役割은 다음과 같다.
 - (1)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企劃
 -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計劃 및 發表
 -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開發
 - 保育施設 自體評價 指針 開發
 - (2) 評價團의 運營
 - 評價團의 構成
 - 評價團의 教育
 - 評價團의 派遣

(3) 評價結果의 認准

- 評價結果의 認准
- 評價結果의 調整

評價團

- 評價團은 非常設 機構로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의 結果에 대한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를 實施하고, 그 평가의 結果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評價管理團에 提出한다.
- 評價團은 保育教師 1급의 資格證을 지니고 保育施設에 5년 이상 종사한 經驗을 가진 保育教師로 구성하며, 現地訪問評價의 편의를 위하여 地域別로 安排한다.
- 評價團의 構成은 評價의 대상이 되는 保育施設의 규모에 따라서 3~4명으로 구성되며, 評價團의 構成은 評價管理團이 選任한다.

自體評價委員會

- 保育施設은 自體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自體評價 實施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한다.
- 自體評價委員會는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보육어린이의 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 保育施設은 自體評價를 실시하여 報告書를 評價管理團에 제출하고, 現地訪問評價團의 評價業務를 支援한다.

第3節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

保育施設에 대한 評價의 認准도 일반적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認准評價體系를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가의 범위가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評價認准의 體系는 3단계로 구성된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1단계는 基準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自己評價段階로 기관 운영자, 교사,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2단계는 保育施設에서 제출한 自體評價報告書의 妥當性 檢證段階로 훈련받은 관찰자가 기관을 방문하고 관찰·보고한다. 3단계는 認准與否의 決定段階로 專門家로 구성된 評價管理團에서 認准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保育施設의 評價認准의 具體的인 過程은 다음과 같다.

(1) 評價認准의 申請과 對象 保育施設의 選定

-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制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保育施設은 願하는 評價時期를 결정하여 신청하게 한다.
-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을 신청한 保育施設들에 대한 評價 時期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保育施設에 통보한다.

(2) 保育施設 自體評價의 遂行

- 保育施設 評價認准 대상으로 선정된 保育施設은 評價管理團의 自體評價 지침에 따라 自體評價委員會를 구성한다.
- 自體評價委員會의 構成은 보육시설 운영 대표,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어린이의 부모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 保育施設 自體評價委員會는 評價管理團이 提供하는 自體評價 指針에 따라 保育施設의 自體評價를 遂行하고, 그 自體評價 結果의 報告書와 관련 자료를 평가관리단에 제출한다.

(3) 書面評價 및 現地訪問評價의 實施

- 評價管理團은 해당 保育施設과 協議하여 現地訪問評價의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評價團을 構成한다.
- 評價團은 評價管理團에 제출된 自體評價 報告書를 검토하고, 現地訪問評價의 지침에 따라 訪問評價를 실시한다.
- 評價團은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評價管理團에 제출한다.

(4) 認准與否의 決定

- 評價管理團은 評價團이 제출한 評價結果報告書를 바탕으로 評價認准 자료를 작성하여 評價認准 여부를 결정한다.
- 評價管理團은 評價의 結果와 認准 與否를 해당 保育施設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保育施設이 評價의 結果 및 認准 與否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한다.
- 保育施設의 異議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評價管理團은 새로운 評價團을 구성하여 再訪問評價를 하도록 한다.

第 4 節 保育施設 評價認准 結果의 活用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目的은 保育施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提供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評價認

准의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保育施設에 대하여 정부나 일반사회가 직접 또는 간접의 지원과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保育施設에 대하여는 어린이의 부모가 保育施設을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保育施設의 評價 結果가 활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保健福祉部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結果는 정부가 保育施設에 대한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財政 支援의 惠澤을 줄 수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 保育事業의 質的 水準을 알 수 있는 統計 資料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保育施設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結果는 保育施設 스스로가 運營과 發展을 위한 活動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게 된다. 評價의 結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長·短期 發展計劃의 樹立, 구체적 개선 프로그램의 구상, 地域社會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계획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3. 地域 社會

保育施設 評價의 結果는 子女의 保育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保育施設을 選擇할 수 있는 準據 資料로 제공될 수 있다.

第 4 章 保育施設 評價基準

第 1 節 評價基準 開發의 基本方向

현재 우리나라에서 保育施設을 통제하는 유일한 道具는 嬰幼兒 保育法和 그와 관련되는 規則들이다. 그러나 嬰幼兒保育法은 물리적 조건만을 規制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물리적 조건들이 兒童保育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그것은 質 좋은 保育을 제공할 수 있는 環境을 창출하는 요인일 뿐 兒童保育의 質을 보장하고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NCAC, 1993: III).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兒童保育의 質을 保障하는 要因인 相互作用의 統制에 강조점을 두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物理的인 環境領域은 嬰幼兒保育法에서 規制되고 있기 때문에 嬰幼兒保育法이 규정하고 통제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保育施設이 물리적 환경면에서 매우 열악하므로 代表的인 準據들(예를 들면, 保育室 面積, 敎師 對 兒童 比率 등)도 評價基準에 포함시켰으며, 단순한 법적 規制에서 評價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물리적 환경부분을 첨가하였다.

4) 보육시설의 면적이거나, 교사대 아동비율 혹은 교사의 자격조건 등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인준체제에서 규정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아동보육의 질을 전문가가 아닌 행정기구에서 규제하는 것도 전문성의 미비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법적인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물리적 환경 측면은 법령에 의해 관련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쉽게 평가하기 힘든 보육의 질적 측면의 평가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의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분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第2節 評價領域, 評價項目, 評價基準의 選定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유치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개발원(1987)의 ‘幼兒教育機關 評價準據’와 국립교육평가원(1994)의 ‘幼稚園教育 評定尺度’가 있으며, 외국의 예로서는, 미국 NAEYC(1984)의 ‘우수한 초기아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Criteria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와 호주 NCAC(1993)의 ‘質的 向上을 위한 認准體制(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가 대표적이다 .

한국교육개발원(1987)에서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평가과정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教育課程 適切性, 教育環境 構成의 適合性, 施設·設備 管理의 效率性, 經營管理의 合理性, 家庭 및 地域社會 關係의 適切性 등의 6개 評價領域을 도출하고 있다. 教育課程 運營의 適切性은 교육계획, 교육·학습과정,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하고, 教育環境 構成의 適合性에서는 실내공간, 실외공간, 교재·교구선정 및 활용에 대한 評價項目을 포함하고 있다. 施設·設備 管理의 效率性에는 기관의 주변환경과 시설·설비 관리를 하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經營管理의 合理性에서는 교원자격 및 경력, 교사 근무조건, 교사 현직교육, 인사관리, 재정, 보건·안전·영양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家庭·地域社會 關係의 適切性에서는 기관과 가정의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체적인 평가 준거라기보다는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로써 구체적인 평가활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시도이다(강숙현, 1988).

국립교육평가원(1994)은 5개의 評價領域과, 60개 項目의 구체적인 幼稚園 教育 評價尺度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표집

한 400개 유치원(사립 200개소, 공립 200개소)을 3개의 전문가 집단(유치원장, 교사, 장학사)이 각각 評價 分析하였다. 評價領域은 物理的 環境構成, 教育課程 運營, 敎員의 專門性, 經營管理, 家庭 및 地域社會와의 關係의 5개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 物理的 環境 構成은 外형적 環境, 실내환경 구성, 시설·설비 상태를 포함하고, 教育課程 運營에서는 교육계획, 교수·학습 과정, 敎育자료, 평가활동을 하위 评价항목으로 포함한다. 敎員의 專門性에서는 敎職생활, 研究 및 연수 활동을 포함하며, 經營管理에서는 敎員의 근무조건, 人事· 재정 관리, 衛生·건강 관리, 安全관리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家庭 및 地域社會와의 關係에서는 유치원의 가정과의 관계와 地域사회와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幼兒敎育의 全般적인 質的 水準의 實態를 파악하고 綜合的으로 評價하는 特性을 갖는다. 즉, 각각의 유치원의 개별적인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립교육평가원의 評價尺度와는 달리 미국의 NAEYC의 評價尺度와 호주의 NCAC가 제시하는 評價尺度는 認准을 위한 것으로 개별 保育施設의 質的 水準의 向上 및 評價를 그 目的으로 한다.

미국의 NAEYC(1984)의 ‘우수한 초기아동敎育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는 우수한 질의 유아敎育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10개 領域과 84개 基準으로 構成하고 있다. 準據로 제시되는 10개 領域은 다음과 같다: 敎師-兒童의 相互作用, 敎育프로그램, 敎師-父母의 相互作用, 敎師資格 및 發達, 運營管理, 敎師 構成, 物理的 環境, 健康 및 安全, 營養 및 給食서비스, 評價(심성경, 1989: 17).

호주의 認准機關인 NCAC는 1993년 保育施設의 質的 向上을 위한 認准制度를 확립하고 兒童保育의 原則과 基準을 相互作用, 保育프로그램

램, 營養·健康 및 安全, 運營管理 및 教師發展의 4개 領域, 52개 基準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하거나 評價하여야 할 領域들을 비슷한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1) 物理的 環境, 2) 運營 및 從事者管理, 3) 健康, 安全, 營養, 給食 및 教育 內容을 포함하는 保育프로그램, 4) 教師와 兒童, 教師와 教師, 保育施設과 父母, 保育施設과 地域社會와의 相互作用의 4개 領域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의 내용은 <表 4> 와 같다.

<表 4> 保育施設의 評價領域

관련기관 평가영역	한국교육 개발원(1987)	국립교육 평가원(1994)	NAEYC (1984)	NCAC (1993)
물리적 환경	교육환경 구성 의 적합성 시설·설비관리 의 효율성	물리적 환경구성	물리적 환경	
운영 및 종사자 관리	경영관리의 합리성	경영관리 교원의 전문성	운영관리 교사자격 및 발달 교사구성 평가	운영관리 및 종사자
보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 영양 및 급식 서비스	보육프로그램 영양·건강·안전
상호작용	가정 및 지역 사회관계의 적절성	가정 및 지역사회 와의 관계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교사-부모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評價基準은 評價項目的 特성에 따라 定量的 評價基準과 定性的 評價基準으로 구분되어 진다. 定量的 評價項目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며, 分析이 容易하고 評價者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評價結果의 妥當度

및 信賴度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相互作用과 같은 定性的 評價基準은 評價者의 價値에 따라 偏見이나 先入觀 등이 개입할 수 있어서 評價結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즉 定量的 評價基準은 객관성, 명료성, 비교 가능성이 있는 반면, 定性的 評價基準은 주관성, 심층성을 갖는다. 前者가 객관적이고 가시적이며 구체성을 띠는 반면에, 後者는 관찰이나 지각에 의해 판단되므로 주관적이고 비가시적이다. 定量的 評價基準과 定性的 評價基準은 相互補完的이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3) 保育施設의 評價에서는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保育施設 評價에서 定量的 評價項目은 保育室의 面積, 教師 對 兒童比率, 集團規模, 教育投資費(교재교구비, 종사자 재교육비), 保育教師의 資格, 教師의 平均經歷 및 持續勤務 個月數, 年平均 教師 補修教育時間 등 에 관한 項目이다. 이 중에서 保育室의 面積과 教師 對 兒童比率은 嬰幼兒保育法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集團規模는 教師 對 兒童 比率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保育教師의 資格은 有資格教師로 구성하도록 하되, 교사진의 전체적인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保育教師의 平均경력 및 현시설에서의 지속근무 개월수는 平均경력이 兒童保育의 質과 항상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의 미비로 인하여 아동보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동보육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개별 아동과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간을 구체적인 評點基準의 根據로 삼았다.

評價基準은 이상적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評價基準이 현실적 상황에서 인적, 물적자원들에 의해 충분히 달성가능한 評價基準일 때 그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定量的 評價項目은 試驗評價에 의해 도출된 統計資料를 바탕으로 評價基準을

구성했다. 試驗評價의 결과에서 나타난 標準偏差를 중심으로, $-1.5Z$ 미만에 대해선 '1'을, $-1.5Z \sim -0.5Z$ 는 '2', $-0.5Z \sim +0.5Z$ 는 '3', $+0.5Z \sim +1.5Z$ 는 '4', 그리고 $+1.5Z$ 이상에 대해서는 '5'의 값을 주어서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하였다. 相對的인 尺度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構成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再調整될 필요가 있으며, 언제나 일정 비율의 보육시설은 相對的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限界를 지닌다. 따라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定量的인 평가항목에 대한 絕對基準의 설정을 고려할 수가 있으나, 試驗評價의 基準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현황을 감안하여 상대적 기준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評價基準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에 투자한 재정의 비율과 교사인의 학력 구성비 및 경력에 관한 항목 등으로 <表 5>에 정리하였다.

<表 5> 保育施設의 定量的 評價基準

평가항목		평가척도				
		5	4	3	2	1
교육투자비율(%)		9% 이상	8.9~7.0	6.9~5.0	4.9~3.0	3% 미만
교사인의 학력구성비 (%)	1 급	90% 이상	89~75	74~60	59~45	45% 미만
	2 급	10% 이하	11~30	31~50	51~70	71% 이상
교사인의 경력(개월)	전체평균경력	60개월 이상	59~48	47~36	35~24	24개월 미만
	지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35~30	29~24	23~18	18개월 미만
교사의 연평균 현직교육시간		42시간 이상	41~33	32~24	23~15	15시간 미만

第3節 保育施設 評價基準의 構成

保育施設의 評價基準은 物理的 環境, 運營 및 從事者管理, 保育프로그램, 相互作用의 4개 領域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34개, 11개, 27개, 21개 등 모두 93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父母의 滿足도를 評價하기 위한 17개의 내용이 포함되어었는데, 이는 保育施設에서 自己評價를 하는 경우 父母의 意見 및 全般的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自己評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細部 內容을 주어진 領域에 대한 評價의 信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試驗調査의 資料를 이용한 問項分析을 하였다. 문항분석의 결과는 Cronbach's α 로 나타나는데, 이 係數는 5점 尺度로 評價된 各 內容의 점수를 單純 合算하여 해당 領域에 대한 評價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細部 內容을 評價하기 위한 구체적인 調査 項目에 대해서는 專門家 델파이調査의 결과를 바탕으로 適合性和 必要性⁵⁾을 알아보았다. 大學의 兒童保育 關聯 學科(幼兒教育科, 兒童學科, 兒童福祉學科, 社會事業學科)에 재직하면서 兒童保育과 관련된 論文을 발표한 적이 있는 教授 30명과 이 研究의 試驗評價에 응해주었던 保育施設 중에서 선정한 20명의 施設 運營者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調査에 응해준 保育 關聯 專門家는 모두 13명이었다. 각 항목의 適合性和 必要性은 調査에 응해준 專門家の 評點을 平均한 것으로, 점수의 範圍는 5(아주 適合

5)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적합성에 대한 응답은 아주 적합(5), 적합(4), 보통(3), 부적합(2), 전혀 부적합(1)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관한 응답은 아주 필요(5), 필요(4), 보통(3), 불필요(2), 전혀 불필요(1)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는 아주 必要)에서 1(전혀 不適合 또는 전혀 不必要)까지 주어진다.

1. 物理的 環境

物理的 環境은 保育施設의 保護와 教育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실내·외 공간구조, 시설 및 설비, 교재 및 교구 등을 포함한다. 物理的 環境은 하루의 대부분을 保育施設에서 생활하는 兒童들의 安全과 健康을 保護하고, 探索과 學習의 機會提供을 통해 兒童의 最適의 發達과 成長을 促進시키는 主要 전제 조건이 되고, 保育의 質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1) 建物の 位置 및 構造(Cronbach's $\alpha = .873$)

保育施設의 立地條件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변환경이 조용하고 教育的이며, 兒童이 登·下院 時 安全하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交通이 便利하여 利用이 쉬운 施設에 높은 점수가 주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방향이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위치하여 햇빛이 비치는 정도가 적당하고, 單層構造로서 安全하고 快適하여 兒童이 長時間 生活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좋은 施設로 評價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 보육시설의 주변환경이 아동들에게 교육적이다.	4.00	4.62
2.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3.92	4.23
3. 건물의 구조가 아동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3.46	4.23
4. 건물의 구조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4.00	4.77

2) 保育施設の 面積 및 保育室面積

保育施設은 兒童의 發達特性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신체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공간배치가 되어야 한다. 兒童의 원활한 실내활동을 위해 아동 1인당 시설면적은 3.63m²이어야 하며, 保育室면적은 3세 미만인 경우 2.64m², 3세 이상일 경우 1.98m²이상 이어야 한다(嬰幼兒保育法 施行規則).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5. 보육실의 면적이 아동 수에 적절하다.	3.77	4.69

3) 保育室 밝기(Cronbach's α = .882)

保育室은 兒童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광면적이 넓고, 밝기가 자연광으로 충분하여 전체적인 실내분위기가 밝은 느낌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빛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블라인드, 커튼, 조명기구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안락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 채광면적이 넓어 일조량의 확보가 충분하다.	3.77	4.15
7.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3.46	3.92

4) 内部空間構造 및 室内·外の 空間移動(Cronbach's α = .875)

아동은 그들과 같은 발달또래에서 안전한 관계를 갖지만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어린 아동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우므로(김은희, 1993: 100), 保育施設은 内部構造가 開放的이어야 하며, 聽覺的인 妨害는 막되 視覺的으로는 相互連繫되도록 設備될 필요가 있다. 투명창이나 문

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여 관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 스스로 실내공간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손잡이의 높이를 아동의 키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문턱이 있어 아동이 출입시 넘어질 염려 등도 없으며, 보육실과 옥외 놀이터의 활동연계도 용이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 내부공간은 각 활동실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3.92	4.08
9. 실내외로의 활동전환이 쉽게 되어 있다.	3.77	4.08

5) 玄關(Cronbach's $\alpha = .875$)

玄關은 兒童들이 아침마다 등원할 때 環境의 變化를 갖게 되는 1次 空間이면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을 連繫시키는 轉移空間이 된다. 兒童에게는 친근감을 주고 보호자에게는 안정감과 환영감을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관 밖에서 내부가 보이고, 현관에서는 내부활동실을 볼 수 있어야 하며(김은희, 1993: 110), 兒童의 登·下院時 父母와 教師의 만남의 場所의 役割을 하므로 인사와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시판을 출입구 가까이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는 부모에게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0. 현관에 부모와 교사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54	4.00
11. 부모에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시판이 출입구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3.77	4.15

6) 興味領域 및 教具(Cronbach's $\alpha = .874$)

4개 이상의 흥미영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할 경우

에는 흥미영역의 수를 제한하여 설치하되 定期的으로 興味領域을 交替하여 아동의 놀이변화 및 활동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구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청결하고 안전하며, 교구 수가 충분하여 여러명의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교재 및 교구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아동의 사용하고 싶은 好奇心을 刺戟해 주고, 자료의 배열도 개방적이어서 아동이 쉽게 사용하며, 사용한 후에는 스스로 정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2. 활동실은 4개 이상의 흥미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3.69	4.38
13.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흥미영역별 교구를 마련하고 있다.	4.00	4.85
14. 교구 및 교재의 수가 아동수에 알맞게 비치되어 있다.	3.92	4.62
15. 교구 및 교재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4.00	4.46

7) 個人所持品 整理空間(Cronbach's $\alpha = .875$)

유아용 신발장, 개인 사물함, 교구 정리장 등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아동의 사용에 적합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6. 아동이 신발장을 쉽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3.92	4.08
17. 아동이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있다.	4.23	4.62
18.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정리할 수 있는 교구정리장이 있다.	4.15	4.54

8) 낮잠 空間(Cronbach's $\alpha = .876$)

아동이 낮잠을 자는 공간은 활동영역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함으로써 주변의 騒音을 차단하여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주는 것이 좋다. 공간확보상 보육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通風이 잘되고 습기가 없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울을 대비하여 바닥 난방을 하여야 하며, 아동 수에 알맞는 깨끗한 침구를 갖추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9. 낮잠을 자는 공간은 아동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3.92	4.62
20. 낮잠 공간에 바닥난방이 되어 있다.	3.77	4.46

9) 衛生 空間(化粧室 및 洗面臺)(Cronbach's $\alpha = .876$)

화장실은 보육실과 가까운 실내에 위치하여 아동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잠그는 장치를 하지 않고 開放的인 構造로 設計함으로써 사용에 안정감을 주며, 보육실에서 교사의 아동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清潔 및 消毒狀態가 양호하여 밝고 깨끗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아동이 배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변기의 크기 및 수는 아동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변기의 수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여자용은 10인당 1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1개, 소변기는 10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 가까이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화장실을 사용한 후이나 옥외활동을 한 후에 아동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세면대의 높이가 아동에게 적절하며, 온수사용이 가능하고, 아동이 사용하는 수건은 깨끗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10명당 1개의 세면대가 요구되어 진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a: 16).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21. 화장실은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4.23	4.54
22. 화장실의 청결 및 소독상태가 양호하다.	4.00	4.54
23. 세면실에서 온수사용이 가능하다.	3.77	4.38
24. 변기의 크기가 아동의 사용에 적절하다.	4.23	4.69
25. 변기의 수가 아동의 사용에 충분하다.	3.77	4.46

10) 調理室(Cronbach's $\alpha = .884$)

조리실은 환기가 잘되고, 창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식기의 소독상태 등이 양호하고, 음식의 위생적인 준비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26. 조리실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다.	3.77	4.38
27. 조리실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3.69	4.15
28. 식기의 소독상태가 양호하다	4.08	4.77
29. 음식이 위생적으로 준비 및 보관되고 있다.	4.15	4.77

11) 室内놀이 空間

실외놀이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끄럼틀, 시이소오, 흔들말 등 아동의 대근육 활동을 위한 적당한 실외놀이 시설물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아동의 대근육 활동과 흥미를 자극하며, 아동의 놀이활동을 돕는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0. 실내에 실외놀이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실외놀이 시설물을 3종 이상 갖추고 있다.	3.92	4.54

12) 室外놀이 空間(Cronbach's $\alpha = .876$)

실외놀이 공간은 흙, 모래, 잔디와 같은 부드러운 바닥, 시멘트와 같은 딱딱한 바닥, 우천시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공간, 햇빛이 화창한 날 놀 수 있는 그늘진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정시설물(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평균대 등)이나 이동물(트램플린, 링터널, 흔들배, 매트리스 등)을 3종 이상 고루 갖추고 兒童의 활발한 활동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실외놀이 공간은 최소한 아동 1인당 $2.5m^2$ 이상이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1. 실외놀이터의 면적이 아동의 원활한 이용과 활동에 충분하다.	4.08	4.54
32. 실외놀이의 공간이 다양하게 처리되어 있다.	3.77	4.46

13) 冷·暖房施設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시설은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설비라 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설치하되 차가운 바람이 아동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점검하는 것이 좋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3.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3.92	4.62

14) 安全設備

콘센트가 안전덮개로 싸여 있고, 안전유리의 사용, 소화용 기구의

비치 등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설비가 된다.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비상시를 위한 사다리, 비상계단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4.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4.00	4.77

2. 運營 및 従事者 管理

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서는 保育의 效果性 및 效率性을 增進시키는 요소로서 教育費의 投資比率과 運營 評價, 教師의 資格 및 補修教育 등 教師의 質的 統制를 다룬다.

1) 教育費 投資比率

적절한 교재 및 교구는 아동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소로서 아동의 교재 및 교구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標準保育單價에 의하면 국공립 및 민간법인 어린이집의 월평균 교재교구비는 2세 미만인 경우 2,000원, 2~3세인 경우 3,000원, 3세 이상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5a).

保育教師의 補修教育은 教師의 發展 및 專門性 涵養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수교육 자체가 教師에게 새로운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燒盡現狀(burn-out)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재교구비 및 教師의 再教育費를 합친 교육비 투자비율은 최소한 保育施設 전체 예산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5. 전체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하다.	3.46	4.08

2) 運營評價

保育施設の 全般的인 運營評價를 施設長과 教師 및 모든 従事者들이 最少한 1년에 1~2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運營評價에서는 兒童과 父母의 要求 充足에 대한 保育 프로그램의 效果를 體系的으로 評價하고, 그 結果를 基礎로 프로그램을 더욱 發展시켜 나가는 것을 目標로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6.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15	4.58

3) 教師의 兒童에 대한 比率

教師의 兒童에 대한 비율은 2세 미만일 경우 1:5 이하, 2~3세인 경우 1:7 이하, 3세 이상일 경우 1:20 이하이며, 이 비율은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지켜져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7.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다.	4.15	4.77

4) 集團規模

아동의 집단크기는 2세 미만일 경우 10명 이하, 2~3세인 경우 14명 이하, 3세 이상일 경우 20명 이하가 적정 규모이다. 混合年齡의 집단일 경우는 어린 兒童의 年齡을 基準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8. 집단(반)의 규모가 아동의 학습활동과 감독에 적정하다.	4.08	4.62

5) 教師陣의 學歷

모든 교사가 兒童保育에 適合한 教育과 訓練을 받고 자격증을 가졌으며,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60%를 차지해야 한다. 단, 국공립과 민간법인의 시설장은 전체 교사진의 학력산출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39. 교사진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4.38	4.85

6) 教師陣의 經歷과 保育의 持續性

教師의 經歷에 따라 教師의 職級과 役割이 나누어져 있다. 시설장(국공립과 민간법인의 경우)을 제외한 교사진의 평균경력은 3년 이상이며,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지속성을 시사해 주는 현 시설에서의 교사들의 평균경력은 24개월 이상이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0. 교사진의 교체가 심하지 않다.	3.92	4.46
41. 교사진의 평균경력이 3년 이상이다.	3.54	3.92

7) 教師의 交代勤務制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아동의 법정 보육시간은 12시간이다. 따라서 兒童의 法定 保育時間을 遵守하기 위해서 교사의 交代勤務制가 실시된다. 교사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超過 勤務手當을 支給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2. 아동의 법정보육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3.85	4.23
43. 교사의 초과근무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3.77	4.38

8) 現職敎育

모든 교사가 자신의 자격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 1인당 연 평균 24시간 이상의 再敎育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보육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敎師資質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샵, 또는 自體研修가 實施될 수 있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4.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15	4.62

9) 새로운 保育敎師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보육기관은 새로 임용되는 교사 및 종사자에게 保育機關의 哲學과 目標, 日課計劃 및 學級運營, 指導方法, 安全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5. 새로이 임용되는 교사 및 종사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3.92	4.38

3. 保育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건강·위생·영양(급식)·안전·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달리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므로, 건강·위생·영양·안전 등은 兒童의 生存 및 成長과 發達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교육에는 敎育計劃, 敎育內容 및 評價를 포함한다.

1) 健康(Cronbach's $\alpha = .852$)

교사는 매일 아침 등원시에 아동의 안색, 발열여부 및 몸의 불편함

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항(특수체질, 병력, 예방접종 등)을 기록하며, 연 2회 이상의 健康診斷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6. 매일 아동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4.00	4.54
47. 아동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92	4.54
48. 아동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3.92	4.46

2) 衛生

교사는 아동들이 청결 및 위생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식사전·후, 옥외활동 후, 배변 후의 씻기와 식사 후의 이닦기를 장려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9. 위생원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62	4.00

3) 營養(Cronbach's $\alpha = .868$)

급·간식 식단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5가지의 기초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된 표준식단으로 짜여 있어야 하며, 다양하게 조리하여 아동이 즐겁게 식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알레르기가 있거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그에 적절한 배려를 하며 음식의 구입, 보관 및 요리의 전 과정이 위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생적인 식수의 제공도 필수적이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50. 아동의 신체발달에 적합한 영양있는 급·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4.15	4.69
51. 아동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고 있다.	4.31	4.54

4) 安全教育(Cronbach's $\alpha = .858$)

보육교사는 응급처치 요령, 사고발생시의 비상연락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대피훈련 요령 등을 잘 알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화재 대피훈련을 아동들과 함께 실시한다. 보육시설은 구급약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의 대피계획, 위급 사태시 필요한 병원과 소방서의 전화번호, 아동의 비상 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52. 위급사태시 필요한 비상 전화번호를 비치하고 있다.	4.08	4.54
53. 위급사태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3.85	4.23
54. 교사진이 응급처치에 대한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	3.85	4.46
55. 아동들에게 화재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77	4.08
56.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00	4.31
57.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4.23	4.69

5) 安全事故에 대한 方針

보육시설에는 각종 비상사태 및 안전사고시의 治療費 負擔 主體 및 分擔比率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명문화된 방침을 비치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58. 보육시설은 비상사태, 사고시를 대비한 명문화된 방침을 비치하고 있다.	3.83	4.25

6) 教育計劃(Cronbach's $\alpha = .846$)

교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있어 1) 보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반영하고, 2)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3) 교육

계획을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4) 계획안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각 학급의 교육계획안은 학습목표, 주제 및 내용, 지도방법,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59. 교육계획을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등으로 체계 있게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다.	4.46	4.77
60. 교육계획안에는 학습목표, 주제 및 내용, 지도방법, 준비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38	4.69
61. 보육프로그램이 교육계획안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4.31	4.62

7) 教育活動의 多樣性

교육활동은 실내/실외활동, 개별/소집단/대집단활동, 동적/정적활동, 아동주도/교사주도활동, 자유선택활동, 현장학습(견학)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2. 교육활동이 실내·외, 대·소집단, 동적·정적, 자유선택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4.23	4.62

8) 教育內容 - 基本生活習慣 形成 및 身體發達(Cronbach's $\alpha = .845$)

교육내용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신체발달을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3. 교육내용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4.15	4.62
64. 교육내용이 아동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4.15	4.46

9) 教育內容 - 情緒 및 社會性 發達(Cronbach's $\alpha = .845$)

교육내용이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 실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5. 교육내용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4.31	4.62
66. 교육내용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4.31	4.62

10) 教育內容 - 認知 및 言語發達(Cronbach's $\alpha = .845$)

교육내용이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을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 실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7. 교육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08	4.46
68. 교육내용이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15	4.54

11) 教育프로그램의 評價(Cronbach's $\alpha = .849$)

명시된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교사들 간에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教育프로그램 評價의 施行日時, 評價方法, 活用計劃 등을 포함하는 評價日程이 樹立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9.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15	4.54
70.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를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00	4.69

12) 兒童評價(Cronbach's $\alpha = .846$)

교사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아동 개개인의 발달 특성 및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評價結果를 累加的으로 記錄하고 保管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수정에 반영하며, 兒童發達에 대한 父母의 理解와 兒童과의 相互作用에 利用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1. 교사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아동 개개인의 발달 상태를 평가한다.	4.23	4.69
72. 교사는 아동의 발달평가에 대한 결과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4.23	4.54

4. 相互作用

상호작용은 教師-兒童, 教師-教師, 保育施設-父母, 保育施設-地域社會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상호작용은 保育의 質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결정하는 요소로서 兒童에 대한 教師의 태도, 언어 및 행동은 아동의 자아 이미지, 아동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教師와 兒童의 相互作用이 兒童統制를 目的으로 하거나, 단순한 육체적 보살핌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兒童의 자신감 및 아동연령에 적절한 독립심 함양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兒童의 健康한 發達을 위해 教師와 父母가 하나의 팀으로 서로 잘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保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 필수적이다.

〈教師-兒童의 相互作用〉

1) 教師의 兒童에 대한 愛情

教師는 兒童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教師는 하루일과

속에서 兒童 개개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아침 등·하원시 教師는 아동에게 정답게 인사를 건네고(영아의 경우, 父母로부터 안아서 건네 받고), 兒童의 父母와 兒童에 대한 對話 및 情報交換을 하게 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3. 교사는 아동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4.62	4.85

2) 教師의 兒童에 대한 公平한 態度(Cronbach's $\alpha = .775$)

教師는 性の 區別이나 家庭環境에 대한 偏見없이 兒童을 公平하게 대하여야 한다. 教師는 兒童의 性別에 따른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고, 남·녀 아동 모두에게 다양한 활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 개개인의 家庭環境 및 成長背景에 대한 정보를 아동과의 학습활동 및 상호작용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4. 교사는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4.54	4.77
75. 교사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구별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4.31	4.54

3) 教師의 兒童에 대한 能動的 反應

教師는 兒童 個個人的 個別的인 欲求와 感情(슬픔, 흥미, 지루함, 호기심, 피로함, 화남 등)에 能動的으로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영아의 용알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아의 울음이나 신경질에 빨리 반응하고, 兒童이 관심받기 원할 때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6.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감정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4.46	4.77

4) 兒童에 대한 肯定的인 指導方法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도할 때, 고함이나 체벌이 아닌 아동발달 수준에 맞는 현실적이고 명확하며 일관성있는 규칙을 제시하고, 그 규칙에 대하여 다른 兒童의 福祉와 연관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兒童間의 葛藤 解決時 아동의 의견을 듣고, 兒童이 相對 兒童의 感情을 理解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7.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4.31	4.69

5) 兒童의 思考力, 創意力 增進(Cronbach's $\alpha = .784$)

教師는 兒童의 思考를 매우 效果的으로 刺戟할 需要가 있다. 教師는 兒童이 새로운 놀이나 대상을 탐구하도록 권장하며, 아동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兒童에게 開放型 質問을 주어 兒童의 創意力과 思考能力을 增進시킨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8. 교사는 아동이 새로운 놀이나 대상을 탐구하도록 권장한다.	4.38	4.69
79. 교사는 아동에게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4.23	4.54

6) 兒童의 言語能力 開發(Cronbach's $\alpha = .775$)

교사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료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0. 교사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얘기한다.	4.62	4.85
81. 교사는 명료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4.54	4.77

7) 兒童에 대한 尊重(Cronbach's $\alpha = .771$)

교사는 아동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하며, 兒童에 대한 尊重感을 표현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며, 아동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행동한다. 아동에게 장난감이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동에 대한 정보(흥미, 가족사 등)를 兒童과의 意思疏通의 資料로 사용하게 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2. 교사가 아동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	4.08	4.31
83. 교사는 아동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행동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한다.	4.23	4.54

8) 食事時間

즐거운 분위기에서 給·間食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영아를 안고 우유를 먹이며, 食事禮法에 대한 教育 및 訓練을 아동연령에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4. 즐거운 분위기에서 급·간식이 이루어진다.	4.15	4.38

9) 兒童과 教師의 어울림

아동들이 교사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워야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5. 아동들이 교사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워 보인다.	4.08	4.38

〈教師-教師의 相互作用〉

10) 教師間の 相互協力性(Cronbach's $\alpha = .783$)

교사들간의 情報交換이 活潑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6. 교사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4.46	4.69
87. 교사들간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4.38	4.62

〈保育施設-父母의 相互作用〉

11) 保育施設에 대한 情報(Cronbach's $\alpha = .785$)

保育施設은 그 시설의 철학,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 연간계획 등을 알리는 소책자를 保育施設을 이용하고자 하는 父母에게 제공하며, 새로운 兒童과 그 父母에게 保育施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88. 보육시설의 철학, 교육목적, 교육내용, 연간계획 등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소책자가 마련되어 있다.	4.00	4.69
89. 보육시설은 새로운 아동과 그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4.15	4.54

12) 兒童發達에 대한 父母와의 意思交換

아동에 관한 意見交換이나 發達水準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모든 아동들의 가족과 다양한 의사소통매체 - 안내게시판, 가정통신, 전화대화, 가정방문, 면담, 부모윌레회의 등 - 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활발한 情報交換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90. 보육시설은 다양한 의사소통매체를 통하여 부모와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4.23	4.54

13) 父母參與

부모는 보육시설의 행사준비나 보조교사로서 참여하며,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計劃과 評價에도 참여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91. 보육시설이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4.38	4.54

〈保育施設-地域社會의 相互作用〉

14) 保育施設의 地域社會 利用

兒童의 最適의 發達과 成長을 위해서 地域社會의 제반기관들과 地域社會의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며 협력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92. 보육시설이 地域社會의 인적 및 물리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4.00	4.38

15) 保育施設의 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參與

보육시설은 地域社會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나 계획이 있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93. 보육시설이 地域社會 발전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3.92	4.31

5. 附錄: 父母 満足度

父母의 満足度는 93항목으로 구성된 保育施設 評價項目 중에서 父母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17항목으로 줄였다. 이는 父母의 評價資料를 통해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에 대한 客觀性的의 獲得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保育施設의 位置 및 構造(Cronbach's $\alpha = .735$)

이 문항은 ‘물리적 환경’의 1, 2항과 연결되는 項目으로서 父母가 생각하는 保育施設의 입지적 조건, 즉 주변환경의 적합성 및 교통의 편리성을 의미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 어린이집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3.92	4.23
2.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이 아동에게 교육적이다.	3.83	4.50
3.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이 아동에게 위험하지 않다.	4.00	4.42

2) 保育施設의 設備, 教具 및 教材(Cronbach's $\alpha = .700$)

물리적 환경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이 문항에서 부모에게 질문하고 있다. 설비의 안전성과 교구 및 교재의 다양성과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적합성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4. 어린이집의 각종 설비가 아동에게 안전하다.	4.08	4.50
5. 모든 놀이감이 우리아이 연령에 적합하다.	4.25	4.83

3) 保育施設(長)의 哲學 및 信念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철학 및 보육에 대한 신념은 보육프로그램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해당 保育施設(長)이 兒童保育에 대한 哲學과 信念(commitment)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6. 어린이집(시설장)이 보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4.15	4.62

4) 保育教師의 資格(Cronbach's $\alpha = .723$)

이 문항은 '운영 및 종사자 관리'영역의 교사진의 학력, 경력 및 현 보육시설에서의 지속성, 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해당 보육시설의 교사진에 대한 부모의 신뢰 및 존경 등을 측정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7. 선생님이 잘 보육한다.	4.17	4.67
8. 선생님에게 믿음이 있다.	4.25	4.75

5) 營養(Cronbach's $\alpha = .721$)

兒童의 給·間食 提供에 관한 문항으로, '보육프로그램'영역의 50, 51항과 관련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9. 급·간식은 아동의 영양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4.00	4.58
10.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이 우리아이의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3.83	4.33

6) 保育内容(Cronbach's $\alpha = .712$)

이 문항은 '보육프로그램'영역 전반과 관련된 문항으로, 특히 62항의 '教育活動의 多様性'과 63~68항의 '教育内容'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1. 보육내용이 자유놀이, 실외놀이, 현장학습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3.92	4.75

7) 保育教師의 兒童과의 相互作用(Cronbach's $\alpha = .720$)

이 문항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전반에 관한 항목으로, 특히 73항의 '教師의 兒童에 대한 愛情', 74~75항의 '教師의 兒童에 대한 公平한 態度', 76항 '教師의 兒童에 대한 能動的 反應'과 상응되는 조사 항목이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2.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4.25	4.67
13. 아이들의 욕구와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4.33	4.58

8) 教師와 父母의 相互作用

이 문항은 88~90항까지의 '保育施設과 父母의 相互作用'에 관한 항목으로, 특히 90항의 '兒童發達에 대한 父母와의 충분한 意思疏通'에 대한 父母의 満足度를 측정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4. 다양한 의사소통매체(가정통신, 전화, 면담, 부모월례회의 등)를 통하여 우리아이의 생활 및 발달상태에 대하여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4.17	4.50

9) 父母의 保育施設 運營의 參與

父母가 保育施設의 運營 全般에 관한 情報를 保育施設로부터 제공 받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그 의견이 保育施設 運營會와 같은 公式的 機構를 통하여 고려될 수 있는 즉, 부모의 의견이 보육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5 월례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83	4.25

10) 父母가 느끼는 兒童의 保育施設에서의 生活에 대한 全般的인 滿足度 (Cronbach's $\alpha = .727$)

父母가 느끼는 兒童의 保育施設에 대한 適應程度와 滿足度, 그리고 그러한 兒童에 대한 父母의 全般的, 綜合的인 滿足度を 측정한다.

평가 항목	적합성	필요성
16. 우리아이는 보육시설에 다닌 이후 생활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4.25	4.50
17.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 한다.	4.25	4.58

第5章 試驗評價의 結果

第1節 試驗評價의 目的 및 方法

1. 試驗評價의 目的

試驗評價는 保育施設 評價基準 開發의 準據를 파악하는 데 주된 目的을 두었다. 그러나 保育施設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評價의 資料들이 아직 미비한 상황을 감안할 때 試驗評價를 통한 우리나라 保育施設의 대략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章에서는 試驗評價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保育水準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2. 評價對象 및 評價節次

試驗評價의 대상으로는 100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施設類型別(國 公立 어린이집, 民間法人 運營 어린이집, 民間個人/團體 運營 어린이 집) 및 地域別(大都市, 中·小都市, 郡地域)로 분류하였다. 保育施設 中 職場保育施設은 설립의 이유와 목적에 國公立이나 民間 어린이집 과는 다르다. 경영자의 철학과 運營방침에 따라 職場保育施設 運營의 내용이 千차만별이며, 대부분의 職場保育施設이 단순한 保護의 次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評價의 基準을 標準化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탓에 職場保育施設은 試驗評價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놀이방 은 주로 하나의 空間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試驗評價를 위한 調査가 保育프로그램 進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

라 調査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試驗評價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表 6〉 試驗評價 對象의 分布

(單位: 個所)

유형	국공립(39)	민간법인(21)	민간개인(39)
대도시(59)	26	7	26
중·소도시(22)	12	3	7
군지역(18)	1	11	6

試驗評價의 對象은 調査의 性格과 內容을 고려하여 有意標集方法을 통하여 個別施設을 抽出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行政區域을 임의로 선정한 후에⁶⁾, 그 구역에 위치한 國公立 어린이집과 民間法人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市廳 幼兒教育係의 도움을 받아 調査 對象을 選定하였다. 그리고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地域사회탁아소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無作爲 標集하였다. 中·小都市와 郡部 地域에서는 該當 道廳의 保育擔當 實務者의 推薦을 받아서 評價對象을 선정하였다.⁷⁾

- 6) 추출된 지역은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 구로구, 송파구이며, 각 구에서 국공립과 민간법인 어린이집을 합하여 5개 시설씩, 민간개인 어린이집을 5개 시설씩 총 10개 시설씩 선정하였다.
- 7) 이러한 표본선정 방식은 표본의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공공 및 민간법인 운영의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때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보육시설이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地域사회탁아소연합회의 회원명부를 근거로 서울지역 민간개인 어린이집을 추출하였는데,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地域사회탁아소연합회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개인 어린이집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이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조사표의 조사 용이성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표본이 지니는 대표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59개소, 중·소도시(포항, 밀양, 전주, 나주)의 22개소, 군지역(경산군, 양산군, 창녕군, 정읍군, 장성군, 화순군)의 18개소가 試驗評價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評價對象이 되었던 保育施設 중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민간개인의 어린이집 1개 시설이 試驗評價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試驗評價는 99개 施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試驗評價는 觀察·面接 및 書類調査方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專門調査員 10명과 研究陣 2명이 1995. 2. 14.~2. 24. 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試驗評價에 참여한 전문조사원 10명은 조사경력이 2~10년 된 사람들이나 保育事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研究陣은 이들 전문조사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保育政策 및 保育實態, 調査內容 및 調査方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試驗評價에 참가한 조사원들이 保育施設을 評價할 수 있는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調査 結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調査方法을 택한 이유는 自體評價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評價方法'을 개발하여 실행해 보려는 연구진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試驗評價는 한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한 施設씩 評價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았다. 該當 保育施設의 運營者와 사전에 협의하여 오전 8시 경부터 시작되는 登院 狀況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8~9시간 동안에 걸쳐 모든 評價領域에 대하여 觀察·面接하였다(附錄 II. 관찰시간표 참조). 그리고 5점 尺度로 評價되는 각 항목에는 빈칸을 두어 調査員 자신의 評點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調査者들이 評點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父母 滿足度는 보육시설의 협조를 얻어 각 시설당 2명의 아동의 부모(대부분이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面接方法에 의하여 調査되었으며, 신뢰성있는 자료를 위하여 조사원이 집

이나 일터를 방문하여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3. 資料의 分析

試驗評價의 結果는 먼저 符號化 作業과 자료 수정 작업을 거쳤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調査對象 어린이집의 一般的 特性和 運營 및 從事者 管理 部門에 대해서는 分布의 頻度を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物理的 環境, 保育프로그램, 相互作用 및 父母滿足度는 地域別 및 施設類型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變量 分析(ANOVA)을 실시하였다.

第 2 節 評價 結果

1. 調査對象 施設의 一般的 事項

가. 設立年度

國公立施設이 가장 많이 설립된 시기는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의 기간이었으며(66.7%), 특히 80년대 초반인 1981~1983년 사이에 53.8%가 설립되었다. 民間法人 어린이집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1~1992년 사이에 33.3%가 設立되었다.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91년도 이후에 69.1%가 설립되었다(表 7 참조).

나. 保育兒童 數

保育施設 類型別 平均 保育兒童 數는 國公立이 87.7명, 民間法人이 95.1명, 民間個人이 29.6명으로 이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1993년에 조사한 규모와 유사하다.⁸⁾ 國公立 어린이집의 84.2%, 民間法人 어린이

집의 81%가 51명 이상의 兒童을 保育하고 있으며, 民間個人 어린이집의 70.3%가 11~30명의 兒童을 保育하고 있다(表 8 참조).

〈表 7〉 保育施設の 設立年度

(單位: 個所, %)

유형	년 도					
	70년 이전	71~80년	81~85년	86~90년	91년 이후	계
국공립	-	1 (2.6)	26 (66.7)	6 (15.4)	6 (15.4)	39 (100.0)
민간법인	7 (33.3)	3 (14.3)	2 (9.5)	1 (4.8)	8 (38.1)	21 (100.0)
민간개인	-	1 (2.6)	2 (5.1)	9 (23.1)	27 (69.1)	39 (100.0)

〈表 8〉 保育兒童의 規模別 施設數

(單位: 個所, %)

유형	규 모						
	10인 이하	11~30인	31~50인	51~100인	101~200인	201인 이상	계
국공립	-	-	6 (15.8)	19 (50.0)	13 (34.2)	-	38 (100.0)
민간법인	-	1 (4.8)	3 (14.3)	12 (57.1)	4 (19.1)	1 (4.8)	21 (100.0)
민간개인	2 (5.4)	26 (70.3)	4 (10.8)	5 (13.5)	-	-	37 (100.0)

國公立이나 民間法人에 비해 民間個人이 3세 미만 兒童을 많이 保育하고 있는데(表 9 참조), 國公立에서 保育되는 兒童의 20.2%, 民間法人에서 保育되는 兒童의 15.9%가 3세 미만인데 비해, 民間個人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保育되는 全體 兒童의 22.2%가 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嬰兒保育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調査對象 國公立 어린이집의 25.6%(10개소), 民間法人 어린이집의 38.1%(8개소), 民間個人 어린이

8) 국공립이 평균 79.6명, 민간개인이 29.2명으로 나타났다(허선 외, 1993: 16).

집의 48.7%(19개소)가 2세 未滿 兒童을 保育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保育事業이 嬰兒保育에는 큰 關心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保育料 免除·減免 兒童 比率

전체 보육아동 중에서 보육료 면제·감면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國公立인 경우 38.7%, 民間法人 55%, 民間個人 5.4%로 나타나 保育施設의 類型에 따라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保育施設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保育施設에 免除·減免 兒童이 많았다.

〈表 9〉 年齡別 平均 保育兒童數

(單位: 名, %)

유 형 \ 연 령	2세 미만	2~3세 미만	3세 이상	전체 평균 보육아동수
국 공 립(39)	5.5(29) ¹⁾	12.4(38) ¹⁾	71.2(39)	87.7
	6.1	14.1	81.2	100.0
민간법인(21)	4.1(13) ¹⁾	11.0(18) ¹⁾	80.0(21)	95.1
	4.3	11.6	84.1	100.0
민간개인(39)	1.7(20) ¹⁾	4.9(30) ¹⁾	23.3(39)	29.6
	5.7	16.5	78.7	100.0

註: 1) 해당 연령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表 10〉 保育料 免除·減免 兒童의 比率

(單位: %)

유 형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국 공 립(31)	21.8	74.1	51.0	38.7
민간법인(21)	36.8	56.6	65.4	55.0
민간개인(39)	1.8	10.4	17.2	5.4

라. 保育 總時間

施設類型別 平均 保育時間은 國公立이 11시간, 民間法人이 10.6시간, 民間個人施設이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國公立施設중 59.5%인 22개 시설, 民間法人중 30%인 6개 시설, 民間個人施設중에서는 32.4%인 12개 시설만이 12시간 보육을 준수하고 있다. 民間個人施設은 6시간을 保育하는 곳도 있는 반면, 14시간까지 保育하는 곳도 있어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保育時間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表 11〉 保育 總時間

(單位: %)

유형 \ 시 간	9시간 이하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이상	계
국 공 립	10.8	24.3	5.4	56.8	2.7	100.0
민간법인	15.0	35.0	20.0	30.0	-	100.0
민간개인	10.8	24.3	32.4	24.3	8.1	100.0

2. 物理的 環境

物理的 環境 領域은 地域別 差異보다는 施設類型別 차이가 두드러 지는데, 특히 서울지역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을 최고로 하고 1점을 최저로 하여 5점 尺度로 評價된 物理的 環境 領域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4인데 비해, 서울지역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2.89로 가장 낮은 評點을 받았으며, 특히 立地條件과 현관의 구조, 화장실의 설비, 실외공간, 안전설비 항목에서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바깥 놀이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근처의 놀이터를 이용하고, 또한 어린이동이 많은 관계로 바깥으로 나가지가 容易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의 評點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表 12〉 物理的 環境 領域의 平均 點數

유 형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대 도시	3.5	3.6	2.89
중·소도시	3.87	3.14	3.62
군 지역	-	3.65	4.05
평 균	3.61	3.56	3.19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表 13〉 物理的 環境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유 형	국공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F Ratio	F Prob.
평가항목					
시설의 입지조건 및 구조	3.8	4.0	3.2	5.426	.001
현관	4.0	3.7	3.1	6.478	.000
화장실	3.7	3.4	2.6	4.674	.002
실외놀이공간	3.5	3.6	2.4	7.277	.000
안전설비	3.7	3.0	2.7	4.348	.003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3. 運營 및 從事者 管理

가. 教師當 兒童數 및 集團規模

영유아보육법은 教師當 兒童數를 兒童의 年齡에 따라 2세 미만은 1:5, 2~3세는 1:7, 3세 이상은 1: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시설들이 이러한 기준을 조금씩 초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2세 미만과 2~3세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4〉 教師當 兒童數 및 集團規模

(單位: 名)

연령 유형	2세 미만		2~3세		3세 이상	
	아동수	집단크기	아동수	집단크기	아동수	집단크기
국공립	5.1	14.4	9.3	14.4	20.7	25.4
민간법인	5.6	12.3	11.5	12.3	20.5	20.8
민간개인	5.1	11.3	8.5	11.3	12.8	16.3

나. 教育投資比率

이 연구에서는 전체 예산의 집행중에서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영역인 教材教具 購入費와 從事者 再教育費를 교육투자비로 정의하였다. 施設類型別 平均 教材教具費는 國公立은 전체 예산의 5.4%, 民間法人은 5.6%로 별 차이가 없으나, 民間個人은 7.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民間個人이 運營하는 保育施設에서는 施設·設備面에서의 부족함을 다양한 教材 및 教具를 통해 補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表 15〉 全體 豫算中 教材教具費가 차지하는 比率

(單位: %)

비율 유형	3% 이하	3.1~5%	5.1~10%	10.1~20%	20.1% 이상	계	평균
	국공립	39.5	21.0	26.0	11.0		
민간법인	36.8	21.0	32.0	5.3	5.3	100.0	5.6
민간개인	35.1	27.0	14.0	19.0	5.4	100.0	7.0

從事者에 대한 再教育費는 없는 경우가 많고(國公立의 28.9%, 民間法人의 36.8%, 民間個人의 43.6%),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國公立의 83.9%, 民間法人의 94.8%, 民間個人의 74.6%가 全體 豫算의 1% 이하

를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비로 할당하고 있다.

〈表 16〉 全體 豫算中 從事者 再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

(單位: %)

비율 유형	없음	1% 이하	1.1~2%	2.1~5%	5.1~10%	10.1% 이상	계	평균
국공립	28.9	55.0	5.2	2.6	5.2	2.6	100.0	1.4
민간법인	36.8	58.0	5.3	-	-	-	100.0	0.4
민간개인	43.6	31.0	7.8	10.4	7.8	-	100.0	1.1

다. 教師

1) 保育教師陣의 學歷

保育施設 類型別 교사진의 학력은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保育教師는 全體 保育教師의 50%에 지나지 않으며, 무자격 教師도 12%나 되었다. 특히 서울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保育教師의 학력 수준에서는 가장 낮았는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保育教師가 全體 保育教師의 35.5%에 머물러 있으며, 無資格教師도 13.1%나 되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 國公立 어린이집의 保育教師의 97.2%가 전문대 이상인 것과 상이한 대조를 이룬다(表 17 참조).

2) 保育教師의 經歷

保育教師의 경력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教師의 경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國公立 및 民間法人 어린이집의 施設長은 직접 아동교육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체 교사진의 평균 경력산출에

서 제외하였고,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施設長이 教師職과 겸직하므로 시설장의 경력을 포함하였다. 教師의 平均經歷은 國公立 및 民間法人 어린이집은 48~50개월이며, 民間個人인 경우는 41개월로 조사되었다 (表 18 참조).

〈表 17〉 保育教師陣의 學歷別 分布

(單位: %)

유형 및 지역		학 력		
		전문대 이상	양성과정	무자격교사
국 공 립	대 도 시	53.8	44.5	1.5
	중 · 소도시	97.2	2.8	-
	군 지 역	100	-	-
	전 체	68.4	30	1.0
민간법인	대 도 시	43.5	52.8	3.5
	중 · 소도시	94.3	5.6	0
	군 지 역	85.4	13.4	2
	전 체	72	25	2
민간개인	대 도 시	35.5	51.3	13.1
	중 · 소도시	82.4	2.8	14.7
	군 지 역	75.3	16.6	8
	전 체	50	37	12

〈表 18〉 教師陣의 平均 保育經歷別 分布

(單位: %)

유 형	개 월					계	전체 평균 근무경력
	24개월 이하	25~36개월	37~48개월	49~60개월	61개월 이상		
국 공 립	23.1	15.4	17.9	17.9	25.7	100.0	50
민간법인	14.3	23.8	23.8	28.6	9.6	100.0	48
민간개인	30.8	25.6	15.4	12.8	15.4	100.0	41

3) 教師의 持續性

兒童保育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教師의 現시설에서의 平均 經歷을 측정하였다. 教師들의 現 施設에서의 平均경력은 民間個人 어린이집일 경우 22.9개월로 조사되어, 國公立 및 民間法人 어린이집의 32~37개월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民間個人 어린이집의 現시설에서의 平均경력 개월수를 施設長과 教師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施設長은 平均 41개월인데 비해 教師는 15개월이었으며 61.5%의 教師들이 12개월 미만으로 나타나 兒童保育의 지속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表 19 참조).

〈表 19〉 教師들의 現施設에서의 勤務期間

(單位: %)

유 형	개 월	12개월 이하	13~24 개월	25~36 개월	37~48 개월	49개월이 상	계	전체 평균 근무개월
국 공 립		5.1	25.7	23.0	23.1	23.1	100.0	37.5
민간법인		4.8	23.8	42.8	19.1	9.5	100.0	32.0
민 간 개 인	전 체	31.6	36.8	15.8	7.9	7.9	100.0	22.9
	시설장	30.6	13.9	16.7	5.6	33.3	100.0	41.0
	교 사	61.5	23.1	10.3	2.6	2.6	100.0	15.0

註: 응답하지 않은 3개 시설은 통계에서 제외함.

〈表 20〉 民間個人 어린이집 教師陣(施設長 除外)의 平均 持續勤務期間

(單位: %)

지 역	개 월	3개월 이하	4~6 개월	7~12 개월	13~24 개월	25개월 이상	계	전체 평균 근무경력
대 도 시		15.4	11.5	30.8	26.9	15.4	100.0	15.2
중 · 소도시		14.3	14.3	28.6	28.6	14.3	100.0	15.0
군 지 역		0	16.7	67.0	0	16.7	100.0	14.2

保育教師의 平均경력과 保育의 지속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소 도시의 國公立 및 民間法人 어린이집으로 平均 5년의 경력을 보이며, 현시설에서 지속된 근무 기간도 43개월로 나타났다(表 21 참조).

〈表 21〉 教師陣의 平均經歷 및 持續勤務期間(施設類型別, 地域別)

지역	유형	국공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전체평균
		대도시	3.8	3.7	3.6
중·소도시	평균경력(년)	36	38.7	24.3	35
	지속근무개월	4.9	5	4.1	4.93
군지역	평균경력(년)	39	43	21	40
	지속근무개월	8	3.9	2.5	4.25
		39	30.8	18	31.5

4) 教師의 年平均 再教育 時間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재교육 시간은 國公立인 경우 平均 19시간, 民間法人 어린이집 28시간,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1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과 관계없이 教師의 再教育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설유형은 民間法人 어린이집이다. 民間個人 어린이집 教師의 再教育時間이 國公立이나 民間法人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은 教師의 잦은 교체 및 이동으로 施設長만 再教育에 參與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22〉 教師의 年平均 再教育 時間

(單位: 時間)

지역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지역	평균
	국공립	21	15	21
민간법인	31.7	29	25.7	28
민간개인	9.8	13	11.2	10

4. 保育프로그램

保育프로그램 領域에서도 物理的 環境領域과 같이 地域別 差異보다는 施設類型別 差異가 뚜렷하며,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評點의 保育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6인데 비해 서울지역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3.13으로 가장 낮았으며, 군지역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3.32로 나타났다. 건강, 위생, 안전사고에 대한 방침, 안전교육, 교육계획, 교육활동구성, 교육내용, 敎育評價 및 兒童評價 항목에서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國公立이나 民間法人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안전사고에 대한 방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군부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안전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의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兒童評價에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23〉 保育프로그램의 平均點數

지역	유형	국공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대도시		4.1	3.98	3.13
중·소도시		4.21	4.1	3.57
군지역		4.1	4.12	3.32
평균		4.02	4.07	3.23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表 24〉 保育프로그램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평가항목	유형	국공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F Ratio	F Prob.
건강		4.2	4.1	3.4	4.001	.005
위생		4.0	3.7	3.3	2.659	.038
안전사고에 대한 방침		4.4	4.5	3.0	10.197	.000

〈表 24〉 계속

평가 항목 \ 유형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F Ratio	F Prob.
안전교육	4.1	3.8	3.0	6.198	.000
교육계획	4.4	4.5	3.6	5.839	.000
교육활동구성	4.2	4.2	3.4	5.065	.001
교육내용	4.3	4.2	3.3	5.887	.000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4.3	4.2	3.1	4.130	.004
아동평가	3.8	3.8	2.9	3.591	.010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表 25〉 保育프로그램의 主要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및 地域別 差異

평가항목 및 지역 \ 유형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안전사고 방침	대 도 시	4.385	4.571	2.808
	중 · 소도시	4.333	4.667	3.714
	군 지 역	5	4.333	2.8
안전교육	대 도 시	4.038	3.571	3.192
	중 · 소도시	4.167	4	2.571
	군 지 역	4	4	2.6
아동평가	대 도 시	3.923	3.857	2.692
	중 · 소도시	3.667	3.667	3.429
	군 지 역	3	3.7	3.6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5. 相互作用

教師와 兒童, 教師와 教師, 保育施設과 父母, 保育施設과 地域社會의 相互作用을 측정하는 相互作用 領域의 全體平均은 3.64로, 시설유

형이나 지역별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保育施設에서 父母의 參與, 地域社會 活用 및 地域社會에의 貢獻 項目이 낮게 조사되었다(表 27 참조).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保育教師는 兒童의 思考力 및 創意力 向上에 脆弱함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民間個人 어린이집이 國公立 어린이집에 비해 兒童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6〉 相互作用 領域의 平均 點數

유 형 지 역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대 도 시	3.6	3.5	3.47
중·소도시	3.93	3.6	3.42
군 지 역	3.66	3.89	4.01
평 균	3.70	3.72	3.54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表 27〉 相互作用 領域의 各 項目에 對한 施設類型別 差異

유 형 평가 항목	국공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F Ratio	F Prob.
아동의 사고력 및 창의력 증진	3.6	3.5	3.5	.536	N.S.
아동에 대한 존중	3.7	3.8	3.9	.597	N.S.
부모참여	2.6	2.5	2.2	.527	N.S.
지역사회자원 활용	2.8	2.6	1.8	3.123	.019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	2.8	2.6	1.8	4.630	.002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6. 父母 滿足度

試驗評價의 대상이 된 99개 施設에서 모두 190명의 保育兒童 부모들이 保育施設에 대한 滿足度の 評價에 대담해 주었다. 評價의 結果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로 保育施設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만족도의 전체적인 平均은 4.29로 保育施設에 대한 調查者의 評價 結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施設類型에 따라 滿足度の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체로 民間法人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調查되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保育施設 운영에 대한 意見이 좀 더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相互作用’ 領域의 부모의 참여 항목이 낮게 評價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保育 教師들과 兒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만족도에서는 급·간식에 관한 항목만이 施設類型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國公立施設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가 民間法人이나 個人 施設の 급·간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28〉 保育施設에 對한 父母의 滿足度

지 역 \ 유 형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대 도 시	4.20	4.10	4.21
중·소도시	4.44	3.90	4.23
군 지 역	4.80	4.56	4.17
평 균	4.29	4.31	4.21

註: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表 29〉 各 項目에 對한 父母 滿足度¹⁾의 施設類型別 差異

유 형	국 공 립	민간법인	민간개인	F Ratio	F Prob.
평가 항목					
보육시설 위치	4.48(76) ²⁾	4.58(39)	4.23(75)	1.503	N.S.
보육시설설비/ 교재교구	4.40(76)	4.46(37)	4.21(75)	.888	N.S.
보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	4.41(76)	4.66(39)	4.49(74)	1.295	N.S.
교사에 대한 신뢰감	4.78(76)	4.70(39)	4.68(75)	.735	N.S.
아동에 대한 공정성	4.63(75)	4.59(37)	4.52(75)	1.255	N.S.
보육활동구성	4.26(76)	4.16(38)	4.09(75)	1.082	N.S.
다양한 의사소통매체	3.92(76)	4.01(39)	3.89(75)	.087	N.S.
부모의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의견반영	3.44(74)	3.45(39)	3.24(74)	1.057	N.S.
급·간식	4.52(76)	4.42(38)	4.41(74)	3.319	.014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 향상	4.73(76)	4.64(39)	4.58(75)	1.349	N.S.

註: 1) 평점기준은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됨.

2) 괄호안의 숫자는 부모 만족도 평가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第6章 結論

第1節 要約

1. 保育施設 評價의 必要性

保育事業은 급속히 부상하는 국가적 事業이 되고, 政府와 民間의 共同努力에 의하여 嬰幼兒 保育의 量的 擴大는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保育事業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는 保育施設의 확충만이 아니라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良質의 保育서비스는 保育의 專門性을 높임으로서 가능해진다. 또한 保育의 專門性은 客觀的인 基準에 바탕을 두는 保育施設의 評價와 改善을 통해서 提高되어 질 수 있다.

2. 保育施設 評價의 體系

保育施設 評價體系에는 公正性和 專門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文獻 研究, 專門家 會議 등을 통하여 제안되는 評價體系는 다음과 같다.

- ① 評價管理團: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보육실무자, 그리고 보육아동의 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企劃, 評價團의 運營, 그리고 評價結果의 認准 등의 기능을 한다.
- ② 評價團: 비상설 기구로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의 결과에 대한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를 실시하고, 그 評價의 결과를 報告書로

작성하여 評價管理團에 提出한다. 評價團은 評價의 대상이 되는 保育施設의 규모에 따라서 3~4명으로 구성되며, 評價團의 구성은 評價管理團이 선임한다.

- ③ 自體評價委員會: 自體評價委員會는 自體評價 실시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自體評價를 실시하며, 그 결과의 보고서를 評價管理團에 제출하고, 現地訪問評價團의 評價業務를 지원한다.

3.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

- 가. 評價認准의 申請과 對象 保育施設의 選定: 評價管理團은 保育施設 評價認准制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保育施設은 評價時期를 결정하여 신청한다.
- 나. 保育施設 自體評價의 遂行: 評價管理團의 自體評價 지침에 따라 自體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保育施設의 自體評價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評價管理團에 제출한다.
- 다. 書面評價 및 現地訪問評價의 實施: 評價團은 評價管理團에 제출된 自體評價 보고서를 검토하고, 現地訪問評價의 지침에 따라 訪問評價를 실시한다.
- 라. 認准與否의 決定: 評價管理團은 評價團이 제출한 評價結果 보고서를 바탕으로 評價認准 여부를 결정한다.

4. 保育施設 評價基準

우리나라에서 保育施設을 통제하는 유일한 도구는 嬰幼兒保育法으로, 保育施設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조건만을 규제하고 있다. 物理的 조건들은 兒童保育의 質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兒童保育의 質을 보장하고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兒童保育의 質을 보장하는 요인인 相互作用의 통제에 강조점을 두었다.

保育施設의 評價基準은 물리적 환경, 운영 및 종사자관리, 保育프로그램,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4개 領域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으며, 부록으로 保育施設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評價項目的 특성에 따라 定量的 評價基準과 定性的 評價基準으로 구분하였다. 保育室의 面積, 教師 對 兒童比率, 集團規模, 教育費投資比率(교재교구비, 종사자 재교육비), 保育教師의 資格, 教師의 平均經歷 및 持續勤務個月數, 年平均 教師 補修教育時間 등의 항목은 定量的 評價基準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定性的 評價基準을 적용했다. 定性的 評價項目은 5점 尺度로 구성하였는데,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가. 物理的 環境

物理的 環境은 兒童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탐색과 학습의 기회제공을 통해 兒童의 最適의 發達과 成長을 촉진시키는 주요 전제 조건으로, 保育施設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어 지는 실내·외 공간구조, 施設 및 설비, 교재 및 교구 등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은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評價된다.

- 建物の 位置 및 構造
- 保育施設의 面積 및 保育室面積
- 保育室 밝기
- 內部空間構造 및 室內·외의 空間移動
- 玄關

- 興味領域 및 教具
- 個人所持品 整理空間
- 낮잠 空間
- 衛生空間(목욕실, 화장실)
- 調理室
- 室內놀이 空間
- 室外놀이 空間
- 冷·煖房施設
- 安全設備

나. 運營 및 從事者 管理

運營 및 從事者 管理는 保育의 效果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서, 다음의 내용이 評價에 포함된다.

- 教育費 投資比率
- 保育施設 運營評價
- 教師의 兒童에 대한 比率
- 集團規模
- 教師陣의 學歷
- 教師陣의 經歷과 保育의 持續性
- 教師의 交代勤務制
- 現職教育
- 새로운 保育教師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다. 保育프로그램

保育프로그램은 保育施設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칭

하는 것으로, 건강·위생·영양(급식)·안전·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健康
- 衛生
- 營養
- 安全敎育
- 安全事故에 대한 方針
- 敎育計劃
- 敎育活動의 多樣性
- 敎育內容
- 敎育프로그램의 評價
- 兒童評價

라. 相互作用

相互作用은 敎師-兒童, 敎師-敎師, 保育施設-父母, 保育施設-地域社會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 敎師-兒童의 相互作用: 敎師의 兒童에 대한 애정, 敎師의 兒童에 대한 공평한 태도, 敎師의 兒童에 대한 능동적 반응, 兒童에 대한 긍정적인 지도방법, 兒童의 思考力 및 創意力 增進, 兒童의 언어능력 개발, 兒童에 대한 존중, 식사시간, 兒童과 敎師의 어울림
- 敎師-敎師의 相互作用: 敎師간의 相互協力性
- 保育施設-父母의 相互作用: 保育施設에 대한 정보 및 兒童發達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교환, 부모참여
- 保育施設-地域社會의 相互作用: 保育施設의 地域社會 利用, 保育施設의 地域社會 발전을 위한 참여

마. 父母 滿足度

부모의 評價資料를 얻기 위한 것으로, 保育施設의 自體評價에 대한 客觀성을 補完하고, 保育施設이 부모와의 相互作用을 提高할 수 있는 方法으로 活用된다.

- 保育施設의 位置 및 構造에 대한 滿足
- 保育施設의 設備, 教具 및 教材에 대한 滿足
- 保育施設(長)의 哲學 및 信念에 대한 滿足
- 保育教師의 資格에 대한 滿足
- 營養에 대한 滿足
- 保育內容에 대한 滿足
- 保育教師의 兒童과의 相互作用에 대한 滿足
- 教師와 父母의 相互作用에 대한 滿足
- 父母의 保育施設 運營의 參與에 대한 滿足
- 父母가 느끼는 兒童의 保育施設에서의 生活에 대한 全般的인 滿足度

5. 試驗評價의 結果

試驗評價의 結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保育水準은 다음과 같다.

가. 評價對象 및 評價節次

國公立, 民間法人運營 어린이집, 民間個人/團體運營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 및 지역별로 분류한 100개소의 어린이집을 試驗評價 對象으로 삼았으며, 99개 施設이 調査에 應했다.

나. 試驗評價의 結果

99개의 保育施設에 대하여 觀察·面接 및 書類調査 方法을 活用한 試驗評價의 主要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調査對象施設의 一般의 事項

- 設立年度: 國公立施設이 가장 많이 設立된 시기는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의 기간이었으며(66.7%), 특히 80년대 초반인 1981~1983년 사이에 53.8%가 設立되었다. 民間法人 어린이집은 1950년대 후반부터 設立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1~1992년 사이에 33.3%가 設立되었다. 民間個人 어린이집은 91년도 이후에 69.1%가 設立되었다.
- 保育兒童 數: 平均 保育兒童 數는 國公立이 87.7명, 民間法人이 95.1명, 民間個人이 29.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保育料 免除·減免 兒童 比率: 全體 保育兒童 중에서 保育料 면제·감면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國공립의 경우 38.7%, 民間법인 55%, 民間개인 5.4%로 나타나고 있다.
- 保育 總時間: 平均 保育時間은 國공립이 11시간, 民間법인이 10.6시간, 民間개인이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2) 物理的 環境

物理的 環境領域은 지역별 차이보다는 施設類型別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서울지역의 民間개인 어린이집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運營 및 從事者 管理

- 教育投資費: 平均 教材教具費에 있어서는 국공립은 전체예산의 5.4%, 민간법인은 5.6%로 별 차이가 없으나, 민간개인은 7.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간법인의 94.8%가 전체예산의 1% 이하를 종사자 재교육비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教師: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保育教師는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全體 保育教師의 50%를 차지했으며, 無資格教師도 全體 教師의 12%나 차지했다. 教師의 평균경력은 41~50개월로 조사되었으나, 현시설에서의 평균경력 개월수는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경우 83.7%의 教師들이 12개월 미만의 경력자로 나타났다. 教師들의 재교육 시간은 국공립인 경우 평균 19시간, 민간법인 어린이집 28시간,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10시간으로 조사되어 教師의 재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施設類型은 민간법인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4) 保育프로그램

保育프로그램 領域도 물리적 환경영역과 같이 지역별 차이보다는 施設類型別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領域에 대한 전체평균은 3.76인데 비해 서울지역의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3.13, 군지역의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3.32로 낮은 評點을 받았다.

5) 相互作用

相互作用 領域의 全體 平均은 3.64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유형이나 지역별 차이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참여, 지역사회활용 및 지역사회공헌 항목이 낮게 조사되었다.

6) 父母 満足度

父母 満足度の 평균은 4.29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로 保育施設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第2節 結論: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導入方案

이 研究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를 導入할 것을 政策課題로 建議하고자 한다.

1.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 導入의 必要性

- 保育事業에 대한 評價의 未洽
 - 保育事業은 급속히 부상하는 국가적 事業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教師의 專門性, 保育프로그램의 內容 등과 같은 質的 側面의 評價基準이 未洽한 상태임.
- 良質의 保育서비스 提供
 -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兒童의 權利임.
 - 政府의 집중적인 財政支援으로 保育事業의 量的인 擴充은 이루어 졌으나,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等한시되었음.
 - 따라서 保育事業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政策課題에는 保育施設의 擴充만이 아니라, 良質의 保育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함.

2. 保育施設 評價體系(案)

- 評價體系 構成의 基本方向

- 評價의 公正性과 專門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構成함.
- 中央保育委員會 산하에 評價管理團을 構成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의 獨立性을 보장함.

- 評價體系

- 評價管理團: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企劃, 評價團의 運營, 그리고 評價結果의 認准 등의 기능을 함.
- 評價團: 保育施設에 대한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를 담당함.
- 自體評價委員會: 自體評價의 實施와 現地 訪問評價團의 評價業務를 지원함.

3. 保育施設 評價認准의 節次(案)

- 評價認准 節次 構成의 基本方向

- 評價의 結果가 법적인 規制가 아닌 認准의 형태를 지니도록 함.
- 따라서 評價認准을 희망하는 保育施設에 대해서만 評價를 실시함.
- 自體評價의 過程이 강조되도록 함.

- 評價認准의 節次

- 評價認准의 申請과 評價對象 保育施設의 選定
- 保育施設 自體評價의 수행
- 書面評價 및 現地訪問評價의 실시
- 認准與否의 결정

4. 保育施設 評價基準(案)

- 評價基準 作成의 基本方向

- 嬰幼兒 保育의 관련법에서 保育施設의 物理的 條件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評價基準의 作成에는 保育프로그램 및 相互作用의 統制에 강조점을 둠.

- 評價基準의 領域

- 物理的 環境 領域
- 運營 및 從事者 管理 領域
- 保育프로그램 領域
- 相互作用 領域

- 評價基準表

- 이 研究에서 개발된 조사표의 活用(附錄 1 참조)

5. 評價認准 結果의 活用(案)

- 保健福祉部

- 정부가 保育施設에 대한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함.
- 각 시설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 保育事業의 質的 水準을 알 수 있는 統計 資料로 활용함.

- 保育施設

- 保育施設 스스로가 運營과 發展을 위한 活動에 필요한 基礎資料로 활용함.
- 評價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長·短期 發展計劃의 樹立, 구체적 개선 프로그램의 구상, 地域社會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계획하는 기초 자료가 됨.

- 地域 社會

- 子女의 保育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保育施設을 選擇할 수 있는 準據 資料로 활용함.

6.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의 導入 節次(案)

- 評價認准制度 導入의 基本 條件

- 外國의 경우 保育施設 評價認准制度를 도입하기 위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
- 關聯 專門家들의 研究를 바탕으로 評價認准制度의 導入이 검토 되어야 함.

- 評價認准制度 準備委員會의 設置

- 兒童保育 關聯 전문가들로 評價認准制度 準備委員會를 구성함.
- 委員會에서 評價認准의 體系 및 節次, 評價基準을 개발함.
- 評價認准制度의 導入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保健福祉部, 教育部 및 勞動部의 관련 공무원과 준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함.

參 考 文 獻

- 강숙현,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유아교사를 위한 핸드북』, 동문사, 1994.
- 국립교육평가원, 『유치원 교육 평가연구』, 1994.
- 김은희, 『보육시설의 내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서울시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정자, 『영유아보육의 새로운 추세와 과제』,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장기발전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춘계 학술대회, 1994.
- 박숙자, 『취업모를 위한 탁아제도 연구』,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까치, 1990, pp.352~383.
- 박혜정·강혜원·장명림,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6-38, 1987.
- 보건사회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I], 총론』, 1991.
- , 『보육사업지침』, 1995a.
- , 『보건사회백서』, 1995b.
- 새세대육영회, 『새세대 어린이를 위한 종일제 교육프로그램, 총론』, 1988.
-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총회 및 대회 자료집』, 1995.
- 심성경, 『NAEYC 기준에 대한 한국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양옥승, 『영유아를 위한 탁아프로그램의 방향』,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 편, 한울, 1991.
- _____, 『가족과 탁아정책』, 『가족과 사회정책』, 한국가족학회 199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92.
- _____, 『영유아보육의 질적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의 모색』,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제2회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1993.
- 이순영, 『탁아기관의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연구-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영·김미령,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중일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양서원, 1990.
- 이영석, 『한국 유아교육시설기관과 표준평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제29권 제2호,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pp.169~221.
- _____, 『영유아 관련시설의 위상진단과 관계법률의 정비방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제2회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1993.
- _____, 『보육프로그램개발의 활성화방향』,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장기발전 방향』,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94춘계 학술대회, 1994.
- 이태영·황영자, 『영아반·중일반 보육원론』, 보육사, 1986.
- 임재택,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안』, 『21세기의 영유아보육』,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한울, 1993, pp.255~28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199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 1992.
- 한국여성개발원,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1987.
- _____, 『도시영세지역 탁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0.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국 탁아모형개발 연구』, 1990.

- _____, 『한국 탁아사업시행에 관한 기초연구』, 1990.
- 행정쇄신위원회, 『영유아 보육부문 행정쇄신안』, 1994.
- 허선·정희연·서정은·유정은·박금희,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3.
- 厚生省兒童家庭局編, 『兒童福祉法の解説』, 1982.
- Belsky, J.,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Developmental Effects and Conditions of Quality",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 New York, N. Y.: Praeger Publishers, 1984, pp.1~34.
- Bredekamp, S. (ed.)/강숙현(역),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 실제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1.
- Bredekamp, S. & P. L. Apple, "How Early Childhood Programs Get Accredited: An Analysis of Accreditation Decisions", *Young Children*, Vol.46, No.1, 1986, pp.34~37.
- Buck, L., "Directors: How to Sell Accreditation to Staff, Board, and Parents", *Young Children*, Vol.42, No.2, 1987, pp.46~49.
- Clarke-Stewart, A., *Day Ca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Cohen, D. & E. Zigler, "Federal Daycare Standards-Rationale and Recommendatio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47, No.3, 1977, pp.456~465.
- Endsley, R. C. & M. R. Bradbard, *Quality Day C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1.
- Goodwin, W. O. & L. A. Driscoll, *Handbook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Joseey-Bass Inc, 1980.
- Greenman, J. T. & R. W. Fuqua (ed.), *Making Day Care Better-Training Evalu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New

- York, N.Y.: Teachers Press, Columbia University, 1984.
- Harms, T. & R. M. Clifford,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80.
- Holloway, S. D. & M. Reichhart-Erikson, "The Relationship of Day-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3, 1988, pp.39~54.
- Kadushin, A. & J. A. Martin, *Child Welfare Services*(4th ed.),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 Kahn, A. & S. B. Kamerman, *Child Care: Facing the Hard Choices*,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7.
- Leavitt, R. L. & B. K. Eheart,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Programs", *Young Children*, Vol.46, No.5, 1991, pp.4~9.
- McCartney, K., S. Scarr, D. Phillips, S. Grajek & J. C. Schwartz,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 Zigler & E,W, Gordon(eds.) *Day Care: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MA: Auburn House, 1982, pp.126~151.
-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Child Care Centers Act*(revised edition 1988): "How to Set Up a Child Care Center - A Guide for Child Care Center Operators", Singapore: Government Printer, 1988.
- NAEYC, "CAP 1, NAEYC's Center Accreditation Project: Goals and Philosophy", *Young Children*, Vol.38, No.3, 1983, pp.33~35.
- _____, "CAP 2, Three Components of High-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 Physical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and Nutrition", *Young Children*, Vol.38, No.4, 1983, pp.51~57.
- _____, "CAP 3, Three Components of High-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 Administration, Staff Qualifications and De-

- velopment, and Staff-Parent Interaction", *Young Children*, Vol.38, No.5, 1983, pp.53~58.
- _____, "CAP 4, Four Components of High-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 Staff-Child Interaction, Child-Child Interaction, Curriculum, and Evaluation", *Young Children*, Vol. 38, No.6, 1983, pp.46~52.
- _____, "CAP 5, Progress Report on the Center Accreditation Project", *Young Children*, Vol.39, No.1, 1983, pp.35~46.
- _____, "What Directors Need to Know about NAEYC's Accreditation System", *Young Children*, Vol.41, No.3, 1986, pp.35~36.
- _____, "Accreditation, A New Tool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Young Children*, Vol.41, No.4, 1986, pp.31~32.
- _____, "Accreditation: Who? What? When? Where? Why?", *Young Children*, Vol.42, No.5, 1987, p.57.
-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Handbook*, Sydney: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3.
- National Research Council,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 Child Care Policy in the 1990'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0.
- U. K., Department of Health,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 Vol.2 Family Support, Daycare and Educational Provision for Young Children*, London: HMSO, 1991.

附 錄

부록 I: 보육시설 평가조사표/119

부록 II: 관찰시간표/137

부록 III: 시험평가 결과 - 일반현황/ 운영 및 종사자 관리/138

III-1. 시설유형별/138

III-2. 대도시/139

III-3. 중·소도시/140

III-4. 군지역/141

附錄 1: 保育施設 評價調査票

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조사표

시설명	()
소재지	시 · 구 시 · 동 읍 면 번지
시설구분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민간(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개인)

I. 일반 현황 (면접/서류)

1. 설립년도: _____년

2. 인가받은 정원: _____명

연령	2세 미만	2~3세	3세 이상
반수	개반	개반	개반
아동수	명	명	명

3. 현재 보육아동수(연령별/보육유형별): 총 _____명

연령	0~6개월	7~12개월	1~2세 미만	2~3세 미만	3~4세 미만	4~5세
반일제						
종일제						
계						
면제아동: _____명			감면아동: _____명			
취업모아동(일반아동): _____명						

4. 반편성: 총 _____개반

아동연령	~ 세	~ 세	~ 세	~ 세
반수	개반	개반	개반	개반

5. 보육시간: 시 분 ~ 시 분

6.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 집단의 크기:

아동연령	세반	세반	세반	세반	세반	세반
교사당아동수	1 :	1 :	1 :	1 :	1 :	1 :
집단크기						

II. 물리적 환경 (관찰)

※ 다음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1~34).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보육시설의 주변환경이 아동들에게 교육적이다.					
2.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3. 건물의 구조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다.					
4. 건물의 구조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5. 보육실의 면적이 아동 수에 적절하다.					
6. 채광면적이 넓어 일조량의 확보가 충분하다.					
7.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내부공간은 각 활동실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9. 실내·외로의 활동전환이 쉽게 되어 있다.					
10. 현관에 부모와 교사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1. 부모에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이 출입구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12. 활동실은 4개 이상의 흥미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13.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흥미영역별 교구를 마련하고 있다.					
14. 교구 및 교재의 수가 아동수에 알맞게 비치되어 있다.					
15. 교구 및 교재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아동이 신발장을 쉽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7. 아동이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있다.					
18.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정리할 수 있는 교구정리장이 있다.					
19. 낮잠을 자는 공간은 아동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20. 낮잠 공간에 바닥난방이 되어 있다.					
21. 화장실은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2. 화장실의 청결 및 소독상태가 양호하다.					
23. 세면실에서 온수사용이 가능하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변기의 크기가 아동의 사용에 적절하다.					
25. 변기의 수가 아동의 사용에 충분하다.					
26. 조리실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다.					
27. 조리실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28. 식기의 소독상태가 양호하다.					
29. 음식이 위생적으로 준비 및 보관되고 있다.					
30. 실내에 실외놀이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실외놀이 시설물을 3종 이상 갖추 고 있다.					
31. 실외놀이터의 면적이 아동의 원활한 이용과 활동에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실외놀이의 공간이 다양하게 처리되어 있다.					
33.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34.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III. 운영 및 종사자 관리

(관찰)

※ 다음은 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35~45).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 전체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하다.					
36.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아동의 발달에 적 합하다.					
38. 집단(반)의 규모가 아동의 학습활동과 감 독에 적정하다.					
39. 교사진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훈련과 교육 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교사진의 교체가 심하지 않다.					
41. 교사진의 평균경력이 3년 이상이다.					
42. 아동의 법정보육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교 사들의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43. 교사의 초과근무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44.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5. 새로이 임용되는 교사 및 종사자에게 오 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IV. 보육프로그램 (면접/서류/관찰)

※ 다음은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46~72).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6. 매일 아동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47. 아동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48. 아동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49. 위생원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0. 아동의 신체발달에 적합한 영양있는 급·간식이 제공되고 있다.					
51. 아동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고 있다.					
52. 위급사태시 필요한 비상 전화번호를 비치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 위급사태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54. 교사진이 응급처치에 대한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					
55. 아동들에게 화재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6.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7.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58. 보육시설은 비상사태, 사고시를 대비한 명문화된 방침을 비치하고 있다.					
59. 교육계획을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등으로 체계있게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다.					
60. 교육계획안에는 학습목표, 주제 및 내용, 지도방법, 준비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보육프로그램이 교육계획안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62. 교육활동이 실내·외, 대·소집단, 동적·정적, 자유선택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63. 교육내용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64. 교육내용이 아동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65. 교육내용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66. 교육내용이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67. 교육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8. 교육내용이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9.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0.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를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71. 교사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아동개개인의 발달 상태를 평가한다.					
72. 교사는 아동의 발달평가에 대한 결과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V. 상호 작용 (관찰)

※ 다음은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73~93).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 교사는 아동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74. 교사는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 교사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구별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76.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감 정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77.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78. 교사는 아동이 새로운 놀이나 대상을 탐구 하도록 권장한다.					
79. 교사는 아동에게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아 동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80. 교사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 로 얘기한다.					
81. 교사는 명료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82. 교사가 이들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3. 교사는 아동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행동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한다.					
84. 즐거운 분위기에서 급·간식이 이루어진다.					
85. 아동들이 교사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워 보인다.					
86. 교사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87. 교사들간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88. 보육시설의 철학, 교육목적, 교육내용, 연간계획 등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소책자가 마련되어 있다.					
89. 보육시설은 새로운 아동과 그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90. 보육시설은 다양한 의사소통매체를 통하여 부모와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1. 보육시설이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92.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리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93. 보육시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 록: 부모 만족도

※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1~17).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린이집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이 아동에게 교육적이다.					
3.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이 아동에게 위험하지 않다.					
4. 어린이집의 각종 설비가 아동에게 안전하다.					
5. 모든 놀이감이 우리 아이 연령에 적합하다.					
6. 어린이집(시설장)이 보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7. 선생님이 잘 보육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선생님에게 믿음이 있다.					
9. 급·간식은 아동의 영양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10.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이 우리 아이의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 보육내용이 자유놀이, 실외놀이, 현장학습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12.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13. 아이들의 욕구와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14. 다양한 의사소통매체(가정통신, 전화, 면담, 부모월례회의 등)를 통하여 우리 아이의 생활 및 발달상태에 대하여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월례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16. 우리 아이는 보육시설에 다닌 이후 생활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17.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 한다.					

附錄 II：觀察時間表

시간	보육프로그램	시험평가원
07~09	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방문: 협조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과정 협의: 연구원 소개, 조사목적 및 과정에 대한 설명과 협의
09~11	자유놀이/교육/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 등원관찰
11~12	실외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 보육프로그램 - 상호작용
12~13	점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13~15	휴식/낮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보육프로그램
15~18	자유놀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프로그램 - 상호작용
18~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만족도

附錄 III: 試驗評價 結果 - 一般現況/ 運營 및 從事者 管理

III-1. 시설유형별

항 목	국공립/법인 (60)	국 공 립 (39)	민간법인 (21)	민간개인 (39)
설립년도	82.8	84.6	79	90
아동총수	90.3	87.7	95	29.6
2세 미만	4.9	5.4	4	1.69
2~3세	11.9	12.4	10.9	4.8
3~4세	27.7	24	34.5	10.3
4세 이상	45.6	45.7	45.5	13
면제·감면아동(%)	44.3	38.6	55	5.4
취업모 아동(%)	55	58.6	49	89
보육총시간	10.9	11	10.6	10.8
교사당 아동수/ 2세 미만	5.2	5.1	5.6	5.0
2~3세	10	9.3	11.4	8.5
3세 이상	20.6	20.6	20.5	12.8
집단크기/ 2세 미만	8.1	8.3	7.8	9.0
2~3세	13.7	14.4	12.3	11.3
3세 이상	24	25.4	20.8	16.3
아동1인당 전체면적	7.7	7.1	8.7	5.1
보육실면적	3.2	3.2	3.3	3.9
종사자 인건비(%)	59.8	59.9	59.7	51.3
주·부식비(%)	19.4	20.3	17.4	19.7
교재교구비(%)	5.4	5.3	5.5	6.9
종사자 재교육비(%)	1.2	1.36	3.6	1
보육교사/ 전문대이상(%)	69.9	68.4	72	50
양성과정(%)	28.7	30	25	37
무자격(%)	1.4	1.02	2	12
교사 평균경력(년)	4.1	4.2	4	3.5
지속근무개월	35	37	31	22
교대근무여부 (%- 함/ 안함/ 비해당)	45/ 46.7/ 8.8	43/ 51.3/ 5.1	47/ 38/ 14	20/ 51.3/ 28
연평균 교사 보수교육시간	22	19	28	10

III-2. 대도시(서울)

항 목	국공립/ 법인 (33)	국 공 립 (26)	민간법인 (7)	민간개인 (26)
설립년도	82.9	85	75	90.8
아동총수	93.8	101	65	23.9
2세 미만	6.6	6.9	5.5	1.3
2~3세	13.6	15.4	7.1	3.6
3~4세	26.2	28.4	18.5	8.8
4세 이상	47	50.8	33.7	10.7
면제·감면아동(%)	24.6	21.8	36.8	1.8
취업모 아동(%)	71.3	74.3	57	92.3
보육총시간	11.7	11.8	11.1	11.2
교사당 아동수/ 2세 미만	4.7	4.7	4.5	5.4
2~3세	8.4	8.6	7.5	7.5
3세 이상	18.9	19.8	15.2	12.3
집단크기/ 2세 미만	8.1	8	8	9.4
2~3세	8.4	8.6	7.5	7.5
3세 이상	18.9	19.8	15.2	12.3
아동1인당 전체면적	6.5	5.45	10.3	4.7
보육실면적	3.3	3.1	4	3.8
종사자 인건비(%)	61.8	61.8	62	47.3
주·부식비(%)	21.8	22.5	17.9	21.5
교재교구비(%)	4.27	4.7	1.8	5.4
종사자 재교육비(%)	0.21	0.2	0.16	0.9
보육교사/ 전문대이상(%)	51.7	53.8	43.5	35.5
양성과정(%)	46.3	44.5	52.8	51.3
무자격(%)	1.97	1.5	3.5	13.1
교사 평균경력(년)	3.8	3.8	3.7	3.6
지속근무개월	35	36	38.7	24.3
교대근무여부 (%- 함/ 안함/ 비해당)	57.6/ 42.4/ 0	53.8/ 46.2/ 0	71.4/ 28.6/ 0	19.2/ 50/ 30.8
연평균 교사 보수교육시간	23.5	21	31.7	9.8

III-3. 중·소도시(포항, 밀양, 전주, 나주)

항 목	국공립/ 법인 (15)	국 공 립 (12)	민간 법인 (3)	민간 개인 (7)
설립년도	83.5	83.2	84.6	92.1
아동총수	84.3	61.3	176	45
2세 미만	2.73	2.6	3	2
2~3세	7.46	5.9	13.6	9
3~4세	27.5	16.4	72.3	13.8
4세 이상	46.5	36.3	87.3	20.2
면제·감면아동(%)	70.6	74.1	56.6	10.4
취업모 아동(%)	27	28.1	20	88.5
보육총시간	9.9	9.6	11	10.2
교사당 아동수/ 2세 미만	5.7	6	5	3
2~3세	10.4	11	8	11.2
3세 이상	22.1	22.5	20	13.7
집단크기/ 2세 미만	9.4	9	11	11.5
2~3세	16	16.4	12	13
3세 이상	24.9	24.9	*	16.2
아동1인당 전체면적	9.42	9.3	9.8	6
보육실면적	3.27	3.2	3.4	3.8
종사자 인건비(%)	56.4	57.4	52.6	61.6
주·부식비(%)	16.4	15.8	18.9	13.6
교재교구비(%)	7.9	6.9	11.4	6.5
종사자 재교육비(%)	2.9	3.6	0.6	1.2
보육교사/ 전문대이상(%)	96.6	97.2	94.3	82.4
양성과정(%)	3.3	2.75	5.6	2.8
무자격(%)	0	0	0	14.7
교사 평균경력(년)	4.93	4.9	5	4.1
지속근무개월	40	39	43	21
교대근무여부 (%- 함/ 안함/ 비해당)	20/ 66.7/ 13.3	16.7/ 66.7/16.7	33.3/ 66.7/ 0	28.6/ 71.4/ 0
연평균 교사 보수교육시간	18	15	29	13

* 무응답

III-4. 군지역(경산군, 양산군, 창녕군, 정읍군, 장성군, 화순군)

항 목	국공립/ 법인 (12)	국 공 립 (1)	민간법인 (11)	민간개인 (6)
설립년도	81.5	92	80.6	89.6
아동총수	88.5	49	92	34.3
2세 미만	3.1	0	3.45	2.8
2~3세	12.6	13	12.6	5.1
3~4세	32	6	34.3	11.8
4세 이상	40.6	30	41.6	14.5
면제·감면아동(%)	64.2	51	65.4	17.2
취업모 아동(%)	50.7	49	50.9	74.6
보육총시간	10.3	12	10.2	9.6
교사당 아동수/ 2세 미만	6.3	0	6.3	4.8
2~3세	14.4	7	15.2	9.2
3세 이상	23.4	18	23.9	13.8
집단크기/ 2세 미만	6.6	*	6.6	7.2
2~3세	15	13	15.2	16.6
3세 이상	26	36	24.7	20.5
아동1인당 전체면적	8.8	25.5	7.3	6.05
보육실면적	3.0	4.4	2.9	4.4
종사자 인건비(%)	58.6	36.2	60.6	56.8
주·부식비(%)	16.5	13	16.8	19.2
교재교구비(%)	5.5	3.7	5.6	13.8
종사자 재교육비(%)	0.87	6.2	0.39	1.36
보육교사/ 전문대이상(%)	86.6	100	85.4	75.3
양성과정(%)	12.3	0	13.4	16.6
무자격(%)	1.83	0	2	8
교사 평균경력(년)	4.25	8	3.9	2.5
지속근무개월	31.5	39	30.8	18
교대근무여부 (%- 함/ 안함/ 비해당)	41.7/ 33.3/ 25	100	36.4/36.4/27.3	16.7/ 33.3/ 50
연평균 교사 보수교육시간	25.3	21	25.7	11.2

* 비해당